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192-14

www.kipo.go.kr

PCT 국제출원 가이드

2016. 12



특 허 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ntents

I 개 요

1. PCT 국제출원이란? 06
 (1) 해외출원의 필요성 06
 (2) 해외출원 방법 06
 (3) PCT의 연혁 08
 (4) PCT 가입국 08
2. 국제출원관련 용어해설 09
3.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 • 단점 10
 (1)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점 10
 (2) PCT 국제출원제도의 단점 11
4.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11
 (1) 이중의 단계 11
 (2) 엄격한 절차 11
 (3) 특허 • 실용신안에 한정 11
5.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13
 (1)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국제단계 수수료) 13
 (2)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국내단계 수수료) 17

II PCT 국제출원 절차

1. 개 요 20
2. 국제단계 20
 (1) 국제출원 20
 (2) 국제출원의 방식심사 26
 (3) 국제조사 30
 (4) 국제공개 38
 (5) 국제예비심사 40
3. 국내단계 49
 (1) 개 요 49
 (2) 한국특허청에 대한 국내단계 번역문 제출 등 (DO(EO)/KR) 49

III PCT 국제출원서 등 주요 서류작성 요령

1. 국제출원서 작성내용 및 요령 52
 (1) 일반적 사항 52
 (2) PCT 출원서(Request) 54
 (3) 발명의 설명(Description) 66
 (4) 청구범위(Claims) 68
 (5) 요약서(Abstract) 69
 (6) 도면(Drawings) 69
 (7) 서열목록(Sequence Listings) 71
2. PCT-SAFE 및 ePCT를 이용한 출원 72
 (1) PCT-SAFE에 의한 전자출원 72
 (2) ePCT에 의한 전자출원 74
3.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작성내용 및 요령 75
4. 주요 중간서류 종류 및 작성 80
 (1) 주요 중간서류의 종류 80
 (2) 주요 중간서류의 작성 81
 (3) 대체용지의 작성 84

Ⅳ PCT 국제출원 출원서 작성 예시 87

Ⅴ 참고자료

- PCT 국제출원절차 지원업무관련 연락처 116
- PCT 체약국 현황(2016.12. 현재, 151개국) 118
- 공개된 PCT 국제출원의 검색 및 확인 방법 119

정 리

1. PCT 국제출원절차와 해외 직접출원 절차 비교도 07
2.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시 서류 제출 34
3. 국제조사기관 업무절차도 35
4.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절차도 44
5.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비교 45
6.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등 보정시 제출서류 46
7. PCT 국제출원 절차 및 관련 규정 47

한걸음 더

※ PCT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12
※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납부하기 18
※ 가산료의 산정 방법 22
※ 자기지정 제도 23
※ 수리관청의 우선권 회복 인정 유보 국가 24
※ 수리관청의 인용에 의한 보완 인정 유보 국가 28
※ 국제조사보고서 인용문헌 제공 33
※ 보충적 국제조사 제공 기관 및 조사범위 37
※ 지정국별 국제공개의 효과를 인정하는 조건 39
※ PCT 제34조 보정이 가능한 기간 43
※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 및 절차 정보 49
※ 국제출원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53
※ 출원인, 발명자 등 성명(명칭)의 영문 기재 방법 54
※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자기지정 제외 58
※ 서열목록 작성 시 필요한 프로그램 71
※ PCT-SAFE를 이용한 출원시 필요한 프로그램 72
※ ePCT 사용 설명서 74
※ 대체용지 작성 요령 84
※ 대체용지 작성 사례 85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의 약자

I

개 요

1. PCT 국제출원이란? 06
(1) 해외출원의 필요성 06
(2) 해외출원 방법 06
(3) PCT의 연혁 08
(4) PCT 가입국 08

2. 국제출원관련 용어해설 09

3.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 • 단점 10
(1)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점 10
(2) PCT 국제출원제도의 단점 11

4.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11
(1) 이중의 단계 11
(2) 엄격한 절차 11
(3) 특허 • 실용신안에 한정 11

5.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13
(1)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국제단계 수수료) 13
(2)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국내단계 수수료) 17

I. 개 요

1. PCT 국제출원이란?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1) 해외출원의 필요성

각국의 특허는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원하는 국가 내에서 발명 기술에 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 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 국가로의 특허출원 행위가 필요 합니다. 해외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해외출원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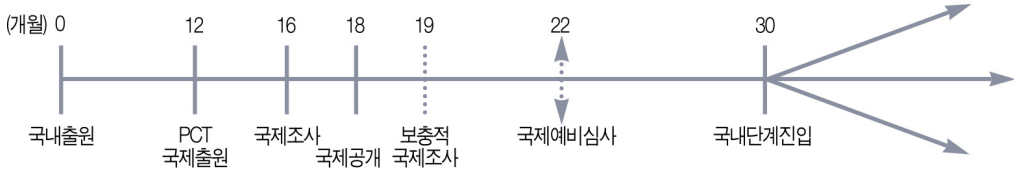
❶ 해외 직접 출원 방법(Paris Route)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파리(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 선(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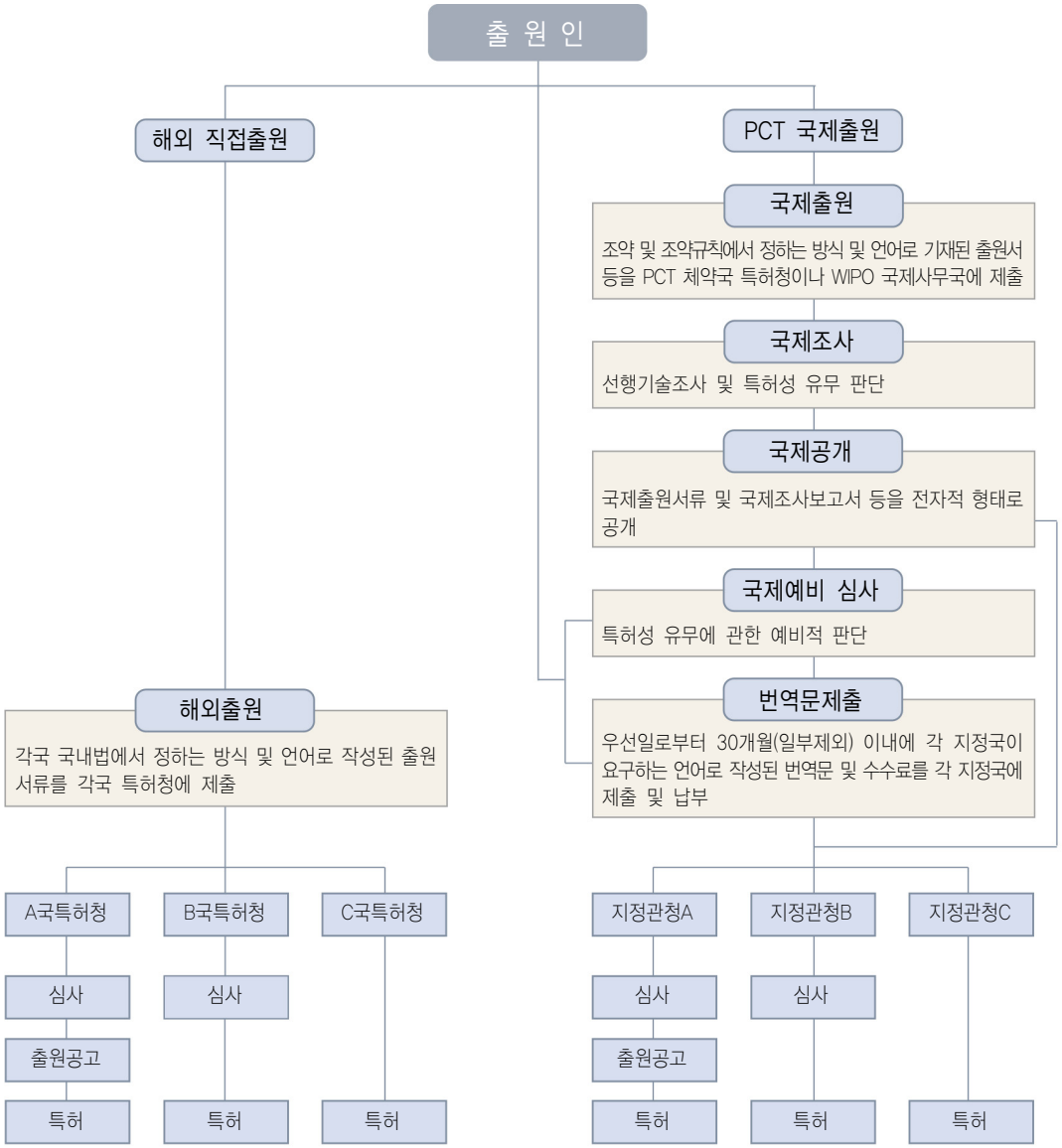
❷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지정국가에 진입하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을 지정국가에서의 특허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한다면 선출원의 출원일을 특허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1

PCT 국제출원절차와 해외 직접출원 절차 비교도



(3) PCT의 연혁

일 자	내 용	비 고
1970. 6. 19	Washington 외교회의에서 조약체결	일명 워싱턴조약
1977. 10. 24	조약발효요건 충족(§ 63)	영국의 조약비준
1978. 1. 24	조약 발효	18개국이 비준서 기탁
1978. 1. 24	국제출원업무 개시(18개국)	EPC와 동시개시
1979. 3.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한국
1980. 5. 4	파리협약 가입	한국
1984. 5. 10	PCT 가입(PCT 제2장 유보)	한국(36번째 가입국)
1984. 8. 10	조약발효 및 국제출원업무 개시	한국
1990. 9. 4	PCT 제2장 유보 철회	한국
1997. 9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한국(WIPO총회)
1999. 12. 1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 개시	한국
2007. 9. 27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	WIPO 총회
2009. 1. 1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관련 업무 개시	한국

(4) PCT 가입국

PCT에 가입된 국가는 2016.12월 기준으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를 포함하여 151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가입국 리스트는 참고자료의 체약국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 국제출원관련 용어해설

❶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국내(또는 지역)관청. 우리나라 출원인의 경우 통상 한국특허청.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도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함(RO/IB).

❷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PCT 국제출원 된 발명의 선행기술 존재여부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배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❸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 IB)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하의 국제사무국으로 국제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 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❹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 **국제조사**는 출원하면 반드시 행하는 **필수 절차**임에 반해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 행하는 **선택적 절차**임

❺ 우선일(Priority Date)

PCT 국제출원 절차 진행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둘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장된 최선(**最先**)출원의 출원일)이며,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의미

❻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 DO)

PCT 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지정된 국가의 국내관청. 2004. 1. 1. PCT 규칙의 개정에 따라 출원서를 제출하면 모든 체약국을 지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됨.

❼ 선택관청(Elected Office : EO)

PCT 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으로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3.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1)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점

❶ 출원일 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❷ 특허획득 가능성을 높임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이상 필수절차) 제공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으므로**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❸ 출원서 작성이 용이

PCT 국제출원시에는 **하나의 언어로 된 출원서류**를 작성하여(한국 특허청의 경우 한국어, 영어, 일어 중 하나) 제출하면 되므로 **출원 초기부터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❹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 국제출원을 통해 출원하여 일단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이후에,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까지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후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❺ 국내단계진입 시 수수료감면 향유

세계 주요 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 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PCT 국제출원제도의 단점

❶ PCT 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 국제출원을 위한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 시와 동일하게 절차 진행 비용 및 대리인 선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

❷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 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 국가에 따라서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1) 이중의 단계

PCT 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인 특허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 등록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엄격한 절차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 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합니다.

(3) 특허·실용신안에 한정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한걸음 더

PCT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❶ PCT 출원후 국내진입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자

PCT 국제출원은 출원 후 지정국으로의 국내진입까지 30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지정국에 제출할 번역문의 작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한국어로 PCT 출원을 하여 출원일을 먼저 확보한 후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번역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❷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진입 전략을 세우고 보정기회를 이용하자

PCT 국제출원 절차가 진행되면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선택사항)를 통해 발명에 대한 특허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발명이 신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면 개별국 진입을 재검토해 볼 수도 있으며 특허성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일단 개별국 진입 후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단계에서 청구항 및 발명의 설명 등 출원서류의 보정 기회가 부여되므로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❸ PCT-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신청 제도를 잘 활용하자

PCT-PPH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서 생성된 보고서 등의 서류를 지정국의 심사에 활용해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특허성에 긍정적인 판단을 받은 청구항이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지정국에서의 특허 등록여부 결정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PCT-PPH는 국가 간 협약으로 우리나라에서 PCT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중국, 유럽특허청, 일본,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스웨덴의 8개 국가(기관)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정국에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수수료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WIPO 홈페이지 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PCT 국제출원을 하고 지정국에 진입하여 특허등록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요구되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출원서를 제출하고 지정국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국제단계, 지정국 진입 후의 국내단계로 크게 나뉘는데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국제단계 수수료만을 말합니다.

(1)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국제단계 수수료)

PCT 국제출원의 국제단계에서 납부가 필요한 수수료는 국제출원료, 국제조사료, 국제예비심사료, 보충적 국제조사료가 있습니다.

❶ PCT 국제출원료(필수)

PCT 국제출원료는 기본료와 출원서가 30매를 초과할 때 가산되는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PCT 출원할 경우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며 통화는 **원화가 아닌 스위스 프랑(CHF)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❷ PCT 국제조사료(필수)

국제조사는 PCT 국제단계 중 필수 절차로서 출원인은 출원료와 함께 국제조사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 중 하나를 조사기관으로 선택하고 해당 조사기관이 요구하는 조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PCT 출원할 경우 **국제조사료는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며 원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❸ 송달료(필수)

PCT 출원인은 출원서 및 국제조사 서류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PCT 출원할 경우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며 **원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허청이 수리관청인 경우 납부하는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2017.1.1. 기준)

종 류			납부액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 CHF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15 CHF		
조사료	한 국	한국어	450,000원		
		영 어	1,300,000원		
	오스트리아**		2,309,000원		
	호 주		1,864,000원		
	일 본		761,000원		
송달료			45,000원		

* 국제출원서를 서면이 아닌 전자출원 방식으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본료에서 300CHF이 감면

**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PCT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❹ 국제예비심사료(선택)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 중 하나를 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예비심사를 청구한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국제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또는 우선일부터 2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입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	납부액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 소
한 국*	심사료	450,000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우)35208
	취급료	227,000원		
오스트리아	심사료	1,749 유로	송금은행 : BAWAG P.S.K 수신자명 : Osterreichisches Patentamt 계좌번호 : 5.160.000 BIC/Swift code : BUNDATWW IBAN : AT75 0100 0000 0516 0000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183유로		
일 본	심사료 (일본어출원)	26,000엔	송금은행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WIFT Code : SMBC JP JT) Tokyo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s Office (Branch number : 096) 은행주소 : 1-6-12, Toranomon, Minato-ku, Tokyo, 105-0001, Japan 수신자명: Jap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096-173377	Office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under the PCT(IPEA/JP) Japan Patent Office 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심사료 (영어출원)	58,000엔		
	취급료	21,600엔		
호 주**	심사료	590(820) 호주달러	송금은행: National Australia Bank 수신자명: IP Australia Official Departmental Account 계좌번호: 082-926 868711229 Swift code: NATAAU3303M	Australian Patent Office (IPEA/AU)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취급료	268 호주달러		

*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심사료 중 ()안의 금액은 호주특허청에서 국제조사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금액

*** 2017.1.기준, 자세한 사항은 WIPO 홈페이지의 지정국 별 정보란(www.wipo.int/pct/en/appguide)이나 각국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기관 연락처

1) 오스트리아(AT) : 전화 (43-1) 53424-0, 팩스 (43-1) 53424-200
2) 일본(JP) : 전화 (81-3) 3592-1308, 팩스 (81-3) 3501-0659/6803
3) 호주(AU) : 전화 (61-2) 6283-2999

❺ 보충적국제조사료(선택)

보충적 국제조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보충적 국제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청구는 국제사무국에 하여야 하며 **수수료 역시 WIPO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보충적국제조사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보충적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국제조사료		보충적 국제조사 취급료
오스트리아	독일어문헌 범주 조사	928 CHF	200 CHF
	유럽 및 북미문헌 범주 조사	1,299 CHF	
	PCT 최소문헌 범주 조사	1,855 CHF	
유럽	2,046 CHF		
핀란드	2,046 CHF		
러시아	172(276)* CHF		
스웨덴	2,046 CHF		
싱가포르	1,621 CHF		
우크라이나	구소련의 러시아어 문헌 및 우크라이나어 문헌 범주 조사	108 CHF	
	유럽 및 북미문헌 범주 조사	217 CHF	
	PCT 최소 문헌 범주 조사	108 CHF	
노르딕	전체 조사	2,046 CHF	
	덴마크어, 아이슬란드어, 노르웨이어 문헌 범주 조사	590 CHF	
비스그라드	전체 조사	2,046 CHF	
	체코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문헌 범주 조사	600 CHF	

* 2016.12. 기준, ()안의 금액은 국제조사기관이 특허대상 문제로 인하여 국제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경우 적용

※ 보충적국제조사수수료의 WIPO 납부 방법

1) WIPO 홈페이지 PCT E-Payment 기능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www.wipo.int/pct/en/fees/supplementary.html)

2) 은행 이체를 이용하여 외환 송부
은행명 : Credit Suisse(CH-1211 Geneva 70), 계좌명 : WIPO/OMPI, 계좌번호(IBAN) :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 Code : CRESCH ZZ80A



(2)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국내단계 수수료)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수수료는 진입한 국가에서 정하는 금액을 해당국가의 통화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현지 대리인을 통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므로 출원료 등 행정비용 외에 대리인 선임 등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국내단계 진입 관련 주요 수수료

구분	한국(원)	미국(달러)	일본(엔)	중국 (위안)	EPO (유로)
출원료	· 46,000(전자) · 66,000(서면)+ 가산료[1]	· 280	· 14,000	· 900+가산료[2]	· 120(전자) · 210(서면) · 가산료[3]
심사청구료	· 143,000원+청구항 수×44,000원 – 한국에서 작성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국제조사보고서 모두 첨부한 경우 심사청구료의 70% 감면 – 둘 중 하나만 첨부한 경우 30% 감면 – EPO의 국제조사 보고서 첨부한 경우 10%감면	· 미국에서 국제예비심사 보고서 또는 견해서 작성 0달러(조사료)+0달러 (심사청구료) · 미국에 국제조사료 납부한 경우 120달러(조사료)+720 달러(심사청구료) · 타기관에서 국제조사 보고서 작성 480달러(조사료)+720 달러(심사청구료) · 그 밖의 경우 600달러(조사료)+720 달러(심사청구료)	·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안 된 경우 118,000엔+청구항수 ×4,000엔 · 일본에서 국제조사 보고서 작성 71,000엔+청구항수 ×2,400엔 · 타기관에서 국제조사 보고서 작성 106,000엔+청구항수 ×3,600엔	· 2,500	· 1,635
설정 등록료	· (1~3년) {15,000원+청구항수 ×13,000원}×3년	· (1~3.5년) 720달러	· (1~3년) {2,100엔+청구항수× 200엔}×3년	· (1~3년) 255위안+900 위안×3년)	· (1~3년) 470유로

1)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2) 30매를 초과하는 명세서 1면마다 50위안, 300매를 초과하는 명세서 1면마다 100위안, 10개를 초과하는 청구항 마다 150위안 가산

3) 36면째부터 15유로 가산

* '2016. 12. 기준' 국내단계 수수료는 개별 출원의 상황에 따라 그 밖에 다양한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는 (www.wipo.int/pct/en/appguide/index.j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걸음 더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납부하기

한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을 하고 국제출원료, 국제조사료, 송달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납부서를 작성합니다.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서 양식(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에 납부해야할 출원료(CHF) 및 조사료(원), 송달료(원)를 기재하고 제출합니다. 이 때 출원료인 스위스프랑을 납부하기 위한 납부서와 조사료, 송달료의 원화 납부를 위한 납부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접수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을 받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❶ 조사료 등 원화 납부 하기

수수료 납부서를 제출하면 접수번호 및 가상계좌번호가 주어집니다. 이를 이용하여 서류 접수일부터 다음날까지 특허청 사이트, 인터넷 지로 사이트, 은행 등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❷ 출원료를 스위스프랑으로 납부하기

출원료에 해당하는 스위스 프랑 금액을 기재한 수수료 납부서를 제출하면 외환가상계좌가 주어집니다. 이를 이용하여 서류 접수일부터 다음날까지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화를 출원료에 해당하는 스위스프랑으로 환전하여 외환 이체합니다. 스위스프랑의 납부는 특허청 사이트,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 할 수 없으며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Ⅱ

PCT 국제출원 절차

PCT국제출원가이드
http://www.kipo.go.kr

1. 개 요 20

2. 국제단계 20
(1) 국제출원 20
(2) 국제출원의 방식심사 26
(3) 국제조사 30
(4) 국제공개 38
(5) 국제예비심사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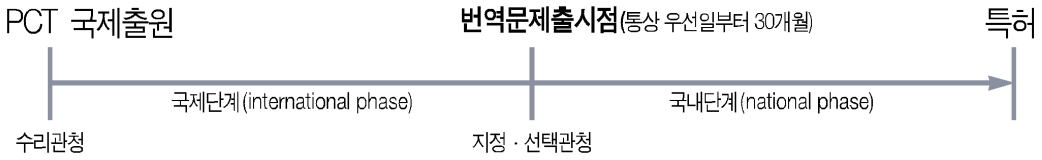
3. 국내단계 49
(1) 개 요 49
(2) 한국특허청에 대한 국내단계 번역문 제출 등 (DO(EO)/KR) 49

Ⅱ. PCT 국제출원 절차

1. 개 요

PCT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각 지정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거절됨으로써 끝납니다. 이러한 국제출원절차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제출입니다. 이 절차 이전까지는 국제출원에 대한 모든 절차가 PCT에 따라 동시에 일률적으로 진행되다가, 이 절차 이후에는 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제출 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national phase)**의 절차**'라고 부릅니다.

※ 국제단계와 국내단계의 구별은 PCT용어는 아니나 간결하고 유용한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국제단계

국제단계에서는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 그 출원에 대한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및 처리,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작성,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출원인의 보정 등의 절차가 행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처리가 PCT 및 PCT 규칙 등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국제출원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수리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출원일에 PCT 조약에 가입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후에 이들 조약국 중 실제로 특허를 받길 원하는 국가에 진입하게 되면 국제출원을 한 날에 이들 지정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ⅰ)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한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자연인·법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자연인·법인), 그리고 이들을 대표자로 하여 이들과 공동 출원하는 외국인,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입니다.

ⅱ) PCT 국제출원언어

PCT 국제출원서류는 한국어·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서류는 선택한 국제출원의 출원언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영어로 병기**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제출원언어: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작성한 언어

ⅲ) 보호의 대상

PCT 국제출원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발명의 보호를 위해 각 국에서는 특허·발명자증·실용신안·실용증·추가특허·추가증·추가발명증·추가실용증 등의 출원형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발명의 보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이 특허 이외의 출원형식으로 출원을 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국이나 선택국의 **국내단계를 밟을 때에 희망하는 보호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ⅳ) 국제출원서류

가. 제출서류

국제출원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원서(Request)

② 발명의 설명(Description)

③ 청구범위(Claim)

④ 요약서(Abstract)

⑤ 필요한 경우 도면(Drawings) 및/또는 서열목록(Sequence listing)을 수리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수료계산서(Fee Calculation Sheet),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기탁할 경우에는 미생물기탁증을 발명의 설명의 일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유전공학관련 서열목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수록한 전자매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국제출원 서류는 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출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출원 방식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제출원 서류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우편제출의 경우에 PCT 국제출원은 국내출원과 달리 우체국소인의 발신일을 출원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v) 수수료납부

유효한 국제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송달료, 국제출원료, 국제조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보정요구하며,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정 기간 내에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됩니다.

한걸음 더

가산료의 산정 방법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금액과는 별도로 미납금액의 50%를 가산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료의 최저금액은 송달료(45,000원)이고 최대금액은 국제출원료의 50%가 됩니다. 가산료는 가산료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의 원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vi) 국가지정

출원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면 국제출원한 날 기준으로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독일**, **일본**, **한국**의 경우 소위 '자기지정'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자기지정 제도

자기지정이란 한국에서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PCT 출원이 한국의 국내 선출원을 우선권 주장하여 출원한 경우 한국이 지정국으로 선택되면 우선권 주장된 국내 선출원은 국내법에 따라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동 취하 간주가 됩니다. PCT 출원으로 인한 선출원의 자동 취하를 막기 위해 PCT는 한국을 포함하여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일본에 대해서 자기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vii) 우선권주장

가. 의의

예를 들어 한국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그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12개월 이내에 미국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면, 미국 특허청은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등을 판단할 때 한국에 출원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나.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는 출원

파리협약 또는 WTO 가입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으며, 국제출원도 우선권주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들이 정규출원으로 인정된 후에는 그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되더라도 우선권주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인과 우선권주장을 하는 출원의 출원인은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양 출원간에는 발명의 동일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은 2개 이상 가능하나 **가장 빠른 선출원의 출원일이 12개월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다. 우선권의 회복*(한국특허청 유보)*

❶ 개요

국제출원이 우선권기간(최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권주장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경과된 기간의 최대치는 경과일부터 2월 이내, 즉, 우선일로부터는 14월까지입니다.(PCT 규칙 26bis.3)

❷ 적용의 유보

우선권 회복 규정이 수리관청의 국내법과 상충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규정의 적용을 유보하였으며 따라서 수리관청에서의 우선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걸음 더

수리관청의 우선권 회복 인정 유보 국가('16.12. 기준)

국제출원에 대한 수리관청의 우선권 회복 규정을 유보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 벨기에,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체코, 독일, 알제리, 그리스, 인도네시아,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필리핀이 있습니다.

라. 우선권주장의 절차

❶ 출원서에 기재

- 출원서(Request)에 선출원일자, 선출원번호 및 선출원국명을 기재합니다.
- 우선권주장일이 국제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넘었더라도 14개월이 넘지 않았으면 기재가 가능하고 국제단계 절차 진행은 이를 우선일로 인정하여 진행됩니다. 다만 해당 우선권주장이 지정국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지정국의 허용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12개월이 경과한 우선권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지정국에서는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❷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6개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6개월과 최초우선일부터 16개월 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❸ 우선권서류의 제출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를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제출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우선권서류송달신청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원인이 직접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수리관청이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줍니다.

viii) 국제출원 등의 취하

출원인은 국제출원 후에 국제단계 진행 중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등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국가의 경우 20개월)이 경과하여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나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국내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지정국마다 국내법에 따라 취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국제출원의 방식심사

ⅰ) 방식심사의 의의

방식심사란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서식이나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리관청은 방식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을 인정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하자가 있으면 보정 또는 보완할 것을 통지합니다.

ⅱ) 국제출원서의 보완

국제출원서의 보완이란 제출된 국제출원서의 요건에 결함이 있어 국제출원일을 부여하기가 힘들 때 보완을 통해 출원서의 하자를 치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완으로 결함이 치유된 경우에는 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보완이 없거나 보완을 하였더라도 여전히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 방식요건

① 출원인이 출원인적격 요건을 충족하는가?

② 국제출원서류가 정해진 언어로 작성되었는가?

③ 국제출원서류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 하나 이상의 체약국 지정여부
-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여부
-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제출여부

나. 처리방법

방식심사 결과 상기요건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 결함을 치유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하거나, 또는
-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인용에 의하여 보완하여 치유하도록 통지합니다.*(한국특허청 유보)*

다. 발명의 설명 등의 일부 누락에 관한 처리

❶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 또는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수리관청의 누락 사실 통지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하여 수리관청의 통지일부터 2월 또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면 그 **누락된 부분이 수리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합니다.**

❷ 상기 ❶의 절차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정정되었으나 국제출원일의 정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의 정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서면을 통해 **누락 부분을 무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 부분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제출원일의 정정은 행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즉, 정정 이전의 국제출원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 인용에 의한 보완*(한국특허청 유보)*

❶ 개요

국제출원시에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 또는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그 누락된 부분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용에 의한 보완 절차를 통해 국제출원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누락된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PCT 규칙 20.5)

❷ 조건

- 우선권 주장된 선출원에 누락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원서에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설명은 출원서에 인쇄되어 제공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용에 의한 보완을 확인하는 서면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 또는 보완통지일부터 2월)

❸ 인용에 의한 보완을 통해 방식상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된 부분이 접수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됩니다.

❹ 적용의 유보

인용에 의한 보완 규정이 수리관청의 국내법과 상충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규정의 적용을 유보하였으며 따라서 수리관청에서의 인용에 의한 보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걸음 더

수리관청의 인용에 의한 보완 인정 유보 국가('16.12. 기준)

국제출원에 대한 수리관청의 인용에 의한 보완 규정을 유보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 벨기에, 쿠바, 체코,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멕시코가 있습니다.

iii) 국제출원서의 보정

국제출원서의 보정이란 제출된 출원서가 국제출원일을 부여할 수 없을 정도록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 사항의 수정 또는 기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경우 보정을 통해 하자를 치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정으로 결함이 치유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함이 없던 출원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적정한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가. 방식요건

①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였는가?

② 요약서가 제출되었는가?

③ 기타 특허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나. 처리방법

상기요건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는 경우에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정할 것을 통지합니다.

다. 보정에 관한 주의사항

❶ 보정에 의한 대체용지

대체용지란 제출한 출원서의 항목 중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해당 부분을 올바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형식요건(Physical requirements)의 하자 보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용지에 대해서만 대체용지를 낼 수 있습니다. 대체용지와 대체되는 용지를 서로 비교하여 크기 등 형식요건에 의한 불가피한 변동을 제외하고 페이지 변동이나 동일 용지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내용의 누락 또는 추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중복 제출되거나 불필요한 대체용지가 제출되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리관청 및 국제사무국은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대체용지의 작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84쪽의 「(3) 대체용지의 작성」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❷ 보정(Correction)의 범위

대체용지 제출을 통한 국제출원서 보정은 PCT 규칙 제26조에 의한 보정(correction)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PCT 규칙 제91조에 의한 정정(rectification)이나 PCT 제34의 규정에 의한 보정(amendment) 등에 의해서만 허용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관청에 의한 보정(correction)을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WIPO 국제사무국에서는 수리관청에 의한 보정(correction)에 대한 PCT 규칙 적합성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정(correction)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3) 국제조사

ⅰ) 국제조사의 개념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됩니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므로 출원인이 절차 진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조사기관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행하고 이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로 작성합니다. 출원인은 조사보고서와 함께 견해서를 검토하여 이후의 절차 진행을 예측하고 출원 진행과 관련한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prior art)이란 당해 국제출원의 출원일보다 앞서 '서면'에 의한 개시(disclosure)를 통하여 공개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ⅱ) 국제조사기관의 선정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ⅲ) 국제조사기관의 주요업무

가. 국제조사 제외대상 여부확인

모든 국제출원은 원칙적으로 국제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제출원의 대상이 국제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청구범위에 대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제조사를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은 청구범위 전부가 국제조사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나, 청구범위 일부에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항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만 국제조사를 수행합니다.

나. 발명의 단일성 조사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납부를 명하고,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수수료가 납부된 발명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속행합니다.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최초로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만 국제조사를 수행합니다.

출원인이 추가수수료 납부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납부함과 동시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납부한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됩니다.

다.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 누락여부 확인

국제조사기관은 수리관청으로부터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누락되었다는 보정통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제조사를 속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이 직접 발명의 명칭을 정하거나 요약서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이 요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국제공개언어로 작성하고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송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약서에 대한 수정 및/또는 작성된 요약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라.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는 국제조사의 핵심 업무로서 청구범위의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을 가지는 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기술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비된 문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주요국의 특허문헌, 정기간행물, 논문 등이 최소 자료로써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선행기술조사의 기준일은 우선권 주장이 있더라도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입니다.

마. 특허성여부 판단과 국제조사기관 견해서

2004년도부터 국제조사기관에서도 특허성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선행기술조사가 주 기능이었던 국제조사기관의 기능이 대폭 확장되어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 여부까지 판단하게 되며 이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라는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견해서를 작성할 때 선행기술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일입니다. 따라서 견해서 작성 시와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시 판단하는 기준일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기한 및 작성언어는 국제조사보고서와 같습니다. 내용면에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와 유사하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

보고서 작성 전단계로서 특허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출원인과 의견교환 없이, 특허성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국제출원 건에 대하여 작성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iv)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가. 작성기한

국제조사기관은 조사용사본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의 요청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누구에게도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국제조사보고서의 활용

❶ 절차진행의 판단자료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명백히 기재된 관련 선행기술로 인하여 출원된 발명의 권리획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취하하거나 국내단계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❷ 청구범위 보정(PCT 제19조 보정)

출원인은 청구범위를 보정하면 권리획득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국제사무국(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기관이 아님에 주의)에 청구범위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정내용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국제출원서 및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국제공개가 됩니다.

제19조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경우에는 (1)보정내용을 담은 청구범위 전체에 대한 대체용지(Replacement Sheet), (2)보정전의 청구범위와 보정 후의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 지가 기재되고 거기에 더하여 청구범위 보정의 근거가 된 부분을 기재한 서한(letter)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보정이 명세서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설명서('Statement under Article 19(1)')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1].

1) 정리 2 참조

❸ 출원인은 ❷에 언급된 보정 이외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에 대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보정 기회를 추가로 가질 수 있습니다.

❹「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1장)」발행

국제예비심사가 청구 되지 않았거나 예비심사가 진행되었더라도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1장)」라는 이름으로 발행하여 출원인과 각 지정관청에 송부합니다. 해당 보고서의 언어가 지정관청의 공식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각 지정관청은 영어로 된 번역문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지정관청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영어번역문을 해당 지정관청과 출원인에게 송부합니다.

한걸음 더

국제조사보고서 인용문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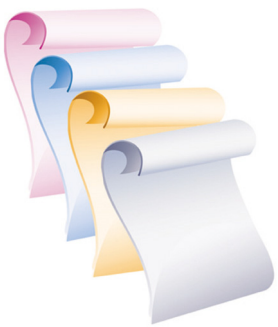
한국 특허청에서 발행한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에 인용된 문헌을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입수 방법
 - 특허청 영문홈페이지를 통해 자료 다운로드 가능 (http://www.kipo.go.kr/en => PCT Service => PCT-Services)
 - 국제조사보고서 발송일부터 6개월까지 가능
 -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
 - 비밀번호 등 필요한 정보는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선언서 송부 통지서(서식 PCT/ISA/220)를 통해 안내
- 온라인 수신을 신청한 경우 상기 검색뿐 아니라 국제조사보고서 송부 시에도 함께 송부됩니다.

정리2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시 서류 제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



대체용지	보정에 의하여 달라진 청구범위를 포함한 전체 청구범위 세트를 기재
서한	보정전과 보정 후의 청구범위의 차이를 기술하고 보정의 근거가 된 최초 출원서의 부분(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을 기재
설명서	보정내용을 설명하고 보정이 명세서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선택사항)
위임장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

- 보정 언어는 국제공개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한국어 출원은 한국어로 작성하고 영어 출원은 영어로 작성)

서한 작성 예시

- 영어 서한

 The applicant, who received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hereby files amendment under Article 19(1) as fol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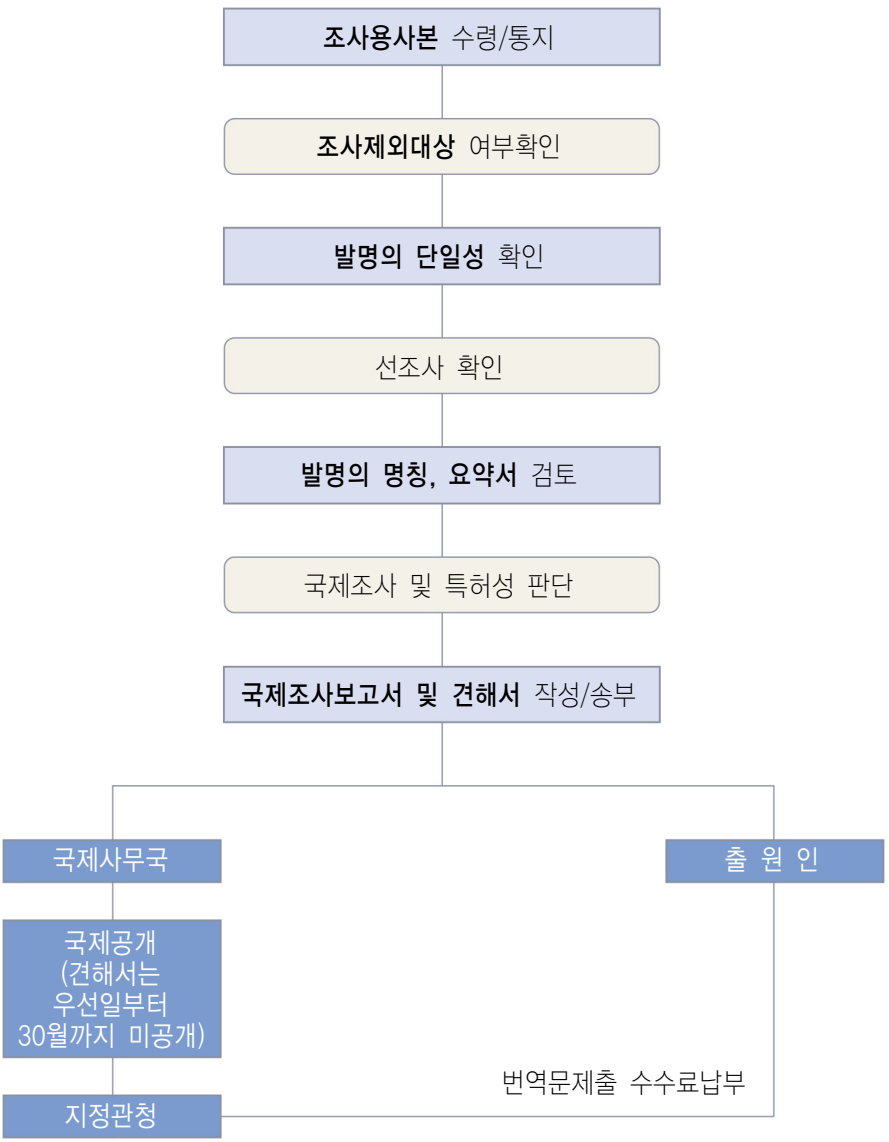
 Claim 5 is amended, the basis for amendment can be found in line 45 of the original description

- 한국어 서한

 청구항 5가 변경됨. 청구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스로우 라인 감지영역' 은 원출원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단락 [55]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정리3

국제조사기관 업무절차도



보충적 국제조사

ⅰ) 보충적 국제조사의 개념

주(主) PCT 조사에 추가하여 보충적 국제조사기관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보충적인 국제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ⅱ) 보충적 국제조사를 신청하는 목적

- 보충적 국제조사를 신청함으로써 국내단계 진입 이후 새로운 선행기술이 언급될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주(主)국제조사기관이 모두 발견하기 힘든 다양한 언어 및 다양한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을 보충적으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보충적 국제조사는 참여하는 국제조사기관(ISA)이 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가능 합니다.

ⅲ) 보충적 국제조사 수행 기관

보충적 국제조사는 모든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보충적 국제조사 업무의 수행을 선언한 기관에서만 제공합니다. 2016.12. 현재 보충적 국제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유럽특허청, 오스트리아 특허청 등 9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충적 국제조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걸음 더

보충적 국제조사 제공 기관 및 조사범위('16.12. 기준)

보충적 국제조사를 제공하는 기관과 각 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충적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국제조사 범위	비고
오스트리아	독일어문헌 범주 조사	3가지 범주 중 최소 한가지 이상 범주를 조사
	유럽 및 북미문헌 범주 조사	
	PCT 최소 문헌이 포함된 범주 조사	
유럽	PCT 최소 문헌이 포함된 범주 조사	
핀란드	PCT 최소 문헌을 포함하여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문헌 범주 조사	
러시아	러시아어 문헌 범주 및 구소련 연방국가의 특허 문헌 조사	
스웨덴	PCT 최소 문헌을 포함하여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핀란드어 문헌 범주 조사	
싱가포르	PCT 최소 문헌을 포함하여 영어, 중국어 문헌 범주 조사	
우크라이나	구소련의 러시아어 문헌 및 우크라이나어 문헌 범주 조사	3가지 범주 중 최소 한가지 이상 범주를 조사
	유럽 및 북미문헌 범주 조사	
	PCT 최소 문헌 범주 조사	
노르딕	PCT 최소 문헌을 포함하여 덴마크어, 아이슬란드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문헌 범주 조사	· 2가지 범주 중 최소 한가지 이상 범주를 조사 · 1년에 최대 500건의 보충적 국제조사만 수행
	덴마크어, 아이슬란드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문헌 범주 조사	
비스그라드	PCT 최소 문헌을 포함하여 체코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문헌 범주 조사	2가지 범주 중 최소 한가지 이상 범주를 조사
	체코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문헌 범주 조사	

iv) 보충적 국제조사의 신청 요건

- 신청서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CT/IB/375 양식 사용 권장)
- 신청서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만료 전에 국제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충적 국제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수수료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보충적 조사료 및 보충적 조사 취급료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主) 조사를 수행한 국제조사기관(ISA)은 보충적 조사를 위한 기관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보충적 조사 신청은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가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취하 신청은 보충적 국제조사 수행 기관 또는 국제사무국 중 한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는 우선일로부터 28월 이내에 작성됩니다.

(4) 국제공개

i) 국제공개의 의의

국제공개제도는 출원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시점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여기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이 송부한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와 국제조사기관이 보내온 국제조사보고서를 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국제공개를 행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ii) 국제공개의 대상

모든 국제출원은 국제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공개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취하간주·전 지정국을 대상으로 한 지정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경우와 미국만을 지정한 경우(미국은 자국에 관한 한 국제공개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을 하였음)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국제공개가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iii) 국제공개의 시기

국제공개는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행해집니다. 그러나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전이라도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면 즉시 공개를 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직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조기공개신청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납부된 직후 국제공개를 행합니다.

iv) 국제공개의 내용

국제공개는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며, 출원인이 제출한 국제출원 전문이 공개되는데, 출원서의 서지적 사항과 요약서가 기재된 표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 제19조 보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된 사항 및 설명서,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합니다. 만일 국제공개 시점 이후에 국제조사보고서가 준비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는 후에 별도로 공개됩니다.

v) 국제공개 언어

현재 국제공개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의 10개 언어이며, 이들 언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각각 이들 언어로 공개됩니다.
공개언어가 아랍어, 중국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인 경우에 국제사무국은 **발명의 명칭**, **요약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공개되는 국제출원서와 함께 공개합니다.

vi) 국제공개되는 정보의 생략 요청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에 포함된 내용이 (1)국제출원에 관한 정보가 명백하게 아니거나 (2)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명백히 해칠 수 있거나 (3)해당 정보를 입수할만한 공중의 지배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공개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PCT/IB/384 양식 사용) 제외신청은 국제사무국에 제출해야하며 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vii) 국제공개의 효과

국제공개의 효과는 각 지정국(선택국)의 국내공개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다만 각 지정국은 공개 효과의 부여를 위해 지정된 언어로된 번역문의 공개 등과 같은 조건을 지우거나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후에만 효과가 발생한다는 시기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한걸음 더

지정국별 국제공개의 효과를 인정하는 조건('16.12. 기준)

국제공개의 효과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지정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어로 공개된 경우에는 국제공개 후에, 외국어로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국내단계 진입 시 제출된 국어 번역문이 공개된 후에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정국의 공개효과 인정 조건은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Annexes B)합니다.
(www.wipo.int/pct/en/appguide/index.jsp)

(5) 국제예비심사

ⅰ) 개념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patentability), 즉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preliminary and non-binding opinion)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이 선택한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수행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판단 내용을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ⅱ)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선정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거나 국제사무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한 우리나라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한국·호주·오스트리아·일본특허청(국제조사 절차를 일본특허청에서 행한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ⅲ)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가. 청구요령

국제예비심사는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국제출원서의 제출과는 별도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2종으로 국제예비심사 취급료와 국제예비심사료로 구성됩니다.

나. 청구시기 및 효과

-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견해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전에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부 PCT 체약국[2]은 국내단계진입 기한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로 PCT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선일로부터 20개월 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9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접수되고, 해당 체약국이 선택국으로 선택되면 국내단계진입기한이 우선일로부터 20월에서 최소 30월로 연장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2)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 이상 3개국(2016. 12. 현재)

다. 국제예비심사 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전까지는 언제라도 국제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제예비심사의 취하가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전에 행하여 졌다면, 우선일로부터 19월 이내에 예비심사청구를 해야 국내단계진입기한이 30개월로 연장되는 일부 선택국(각주2 참조)은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시키면 되지만, 20개월 후에 행하여 졌다면 국제출원은 해당 선택국에서 취하된 결과를 갖게 됩니다.

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우선 간주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조사기관에서 작성된 견해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1차 견해서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국제예비심사 견해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은 2개 이상의 견해서를 작성하여 통지할 수 도 있습니다. 출원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또는 둘 모두를 제출함으로써- 통지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iv) 국제예비심사의 진행

가. 국제예비심사의 대상범위 확정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서에 포함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을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한 국제예비심사 청구 전 또는 후에 이루어진 PCT 제19조 보정[3] 및 제34조 보정[4]이 있는 경우 이들 보정도 국제예비심사에 반영합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 보고서나 견해서의 작성이 이미 시작된 후에 보정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를 위하여 우선권서류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사무국에 우선권 서류의 사본 송달을 요청합니다. 만약 우선권 서류의 언어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가 아니라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출원인에게 번역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귀책사유로 우선권서류 및 번역문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우선권주장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되어 작성될 수 있습니다.

3) 정리 2 참조

4) 정리 6 참조

나. 출원인과 의견교환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출원인은 심사과정에서 구두, 서면, 전화,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연락이 가능합니다.

다. 견해서(written opinion)의 작성

견해서란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부정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반드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서면통지로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원인이 견해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 둘 다 제출도 가능-하여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출원인이 견해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부정적으로 작성됩니다.

라. 발명의 단일성 심사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이 요구에 응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했으나 여전히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주(主)발명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합니다.

마. 발명의 설명 등의 보정(PCT 제34조 보정)의 처리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시작하기 전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5]. 보정서는 직접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이를 참조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34조 보정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1)기존에 제출되었던 내용을 보정하는 각각의 대체용지(Replacement Sheet), (2)보정전과 보정 후의 용지의 차이점 및 보정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더하여 최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에서 보정 근거가 된 부분을 기재한 서한(letter)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6] 청구범위를 보정할 경우에는 제19조 보정의 방법과 동일하게 보정내용을 담은 청구범위 전체에 대한 대체용지(Replacement Sheet)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요약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정리 6 참조

한걸음 더

PCT 제34조 보정이 가능한 기간

PCT 제34조 보정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 도 있고 국제예비심사 청구 후에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기한이 있고 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제출된 보정 요청은 예비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심사 청구 당시에는 보정할 상황이 아니지만 이후에 보정의 계획이 있다면 그러한 계획을 담은 서면을 국제예비심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PCT 규칙 Rule 66.1bis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곧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의 작성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출원인은 제34조 보정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v) 국제예비심사보고서

가.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2장)」

국제예비심사기관의 보고서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2장)」라는 이름으로 작성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해 작성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는 내용이 부기됩니다.

나. 작성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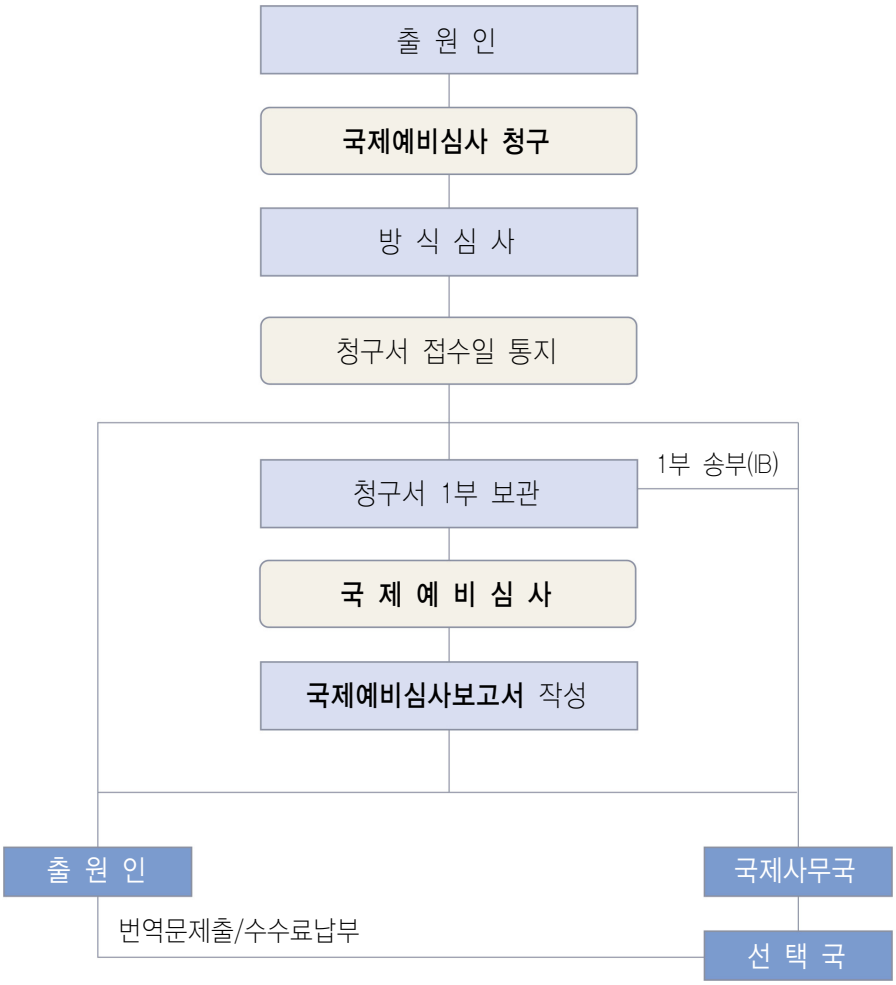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PCT규칙 69.1)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됩니다.

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결과 PCT 국제출원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이 결여되어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참고하여 이후의 국내단계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록 각 지정국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국내단계 절차를 우호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정리4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절차도



정리5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비교

	국 제 조 사	국 제 예 비 심 사
목 적	관련 선행기술의 발견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이용가능성 여부
대 상	모든 국제출원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
범 위	명세서, 도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초	청구범위 · 발명의 설명 · 도면
판단 기준일	국제출원일	우선일
연 락 권	없음	있음
보 정	국제조사보고서 수령 후 소정기간 내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시 전
단일성 결여	추가수수료 지불요구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 지불요구
대 상	모든 국제출원(강제적 절차)	임의적, 선택적 절차
관 할	국제조사기관 (ISA)	국제예비심사기관 (IPEA)
지정선택	출원서 제출로 출원일의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	청구서 제출로 조약 제2장에 구속되는 모든 지정국의 선택을 구성
이용 가능자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즉, 거주지 또는 국적에 따라 국제조사기관 선택 가능	제2장 규정에 구속된 체약국 거주자 또는 국민이 그러한 체약국 또는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수리관청에 국제출원 한 경우만 적용
절 차	❶ 국제조사기관과 출원인간의 의견교환–원칙적 불허용 ❷ 보정 불허용 ❸ 불리한 보고 작성 전에 예고 받을 권리 없음 ❹ 단일성불인정 경우에 추가수수료 납부 ❺ 절차의 종료 – 보고서 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견해서 작성	❶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 관리함 ❷ 보정허용 ❸ 불리한 보고 작성 전에 예고 받을 권리 있음 ❹ 단일성불인정 경우에 추가수수료 납부 또는 청구범위 감축 ❺ 절차의 종료 – 보고서 작성
기관의 역할	– 발명의 명칭, 요약서의 점검 작성 –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이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견해서 작성	국제예비심사의 일환으로 국제출원의 결함 점검
보 고	국제조사보고서는 국제사무국 책임하에 각 지정관청에 송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사무국 책임하에 부속서류도 함께 각 선택관청에 송달
국제 공개여부	국제조사보고서는 국제공개, 견해서는 비공개(우선일부터 30월경과 후 공지)	전부 비공개(우선일부터 30월 경과 후, 선택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지)
국내절차 진입기간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다만, 2016.12. 현재 3개국에 대하여는 2002.4.1. 조약개정이전의 규정 적용)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다만, 2016.12. 현재 3개국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가 우선일로부터 19개월 만료 전에 청구되고 해당국을 선택국으로 한 경우에 적용)

정리6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등 보정시 제출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서식의 신청구분에서 '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 선택하고 제출기관을 '국제예비심사기관' 선택)
대체용지	보정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각각의 용지 전체에 대하여 대체용지를 제출. 청구범위 보정의 경우에는 제19조 보정시와 동일한 방법 적용
서한	보정전과 보정 후의 대체용지 차이를 기술하고 보정하는 이유를 설명. 또한 반드시 보정의 근거가 된 최초 출원서의 부분(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을 기재
위임장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

- 보정을 위한 언어는 국제공개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한국어 출원은 한국어로 보정서를 작성하고 영어 출원은 영어로 작성)

서한 작성 예시

- 영어 서한

 The applicant hereby requests, under PCT Article 34, that amendment be made as follow;
 On replacement page 4 at line 12, the number 22 was replaced with 222. Concerning amendment, the indication is in drawing No.4 of the original application

- 한국어 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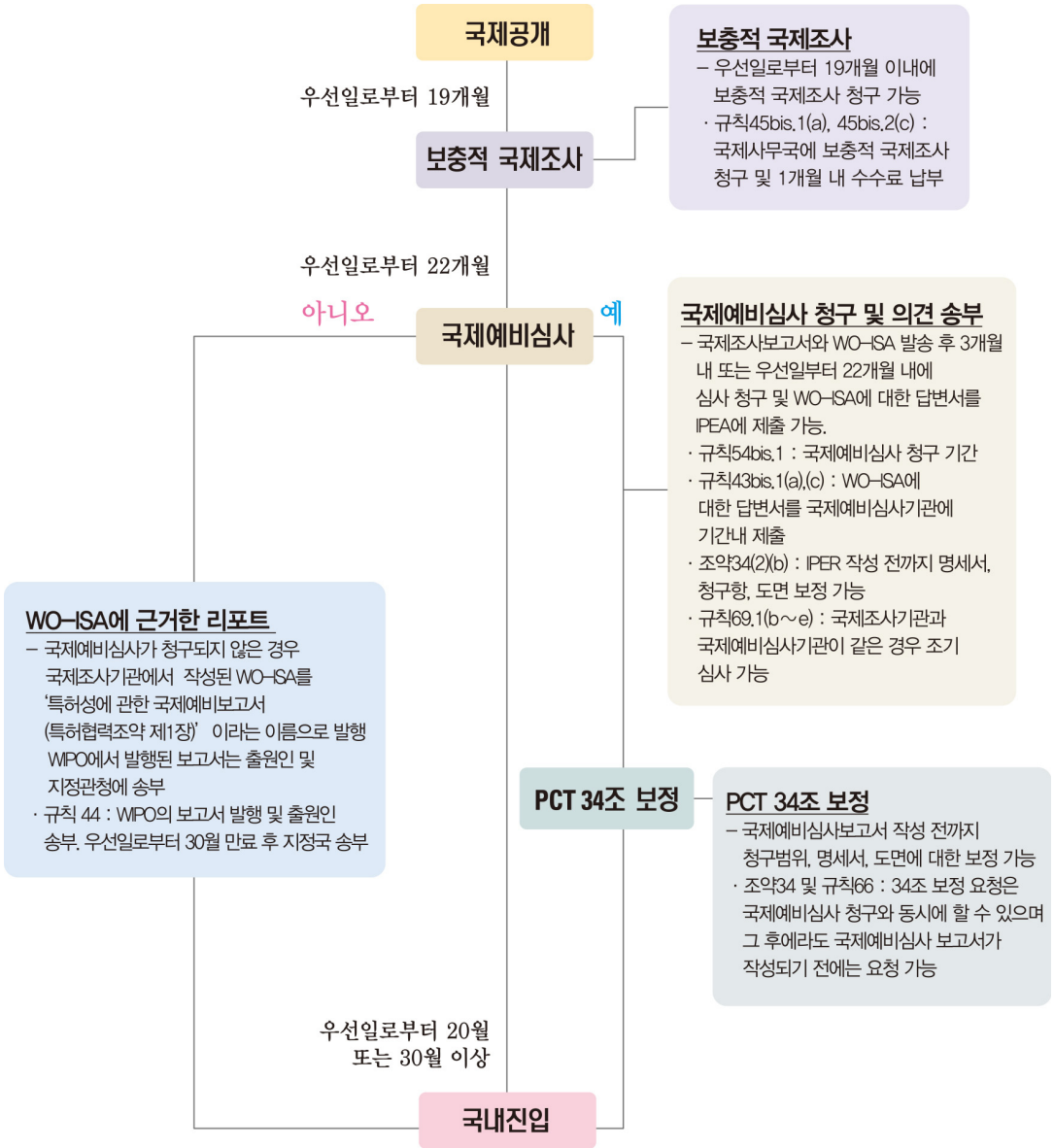
 도 3 및 도 6의 일부가 변경됨.
 본 출원인은 본원 발명의 도면이 착오로 첨부되어 이를 바로 잡기위해 보정하였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단락 [55]를 참고하면, 제3 크랭크와 스로우 라인 사이의 감지 영역이 존재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리7

PCT 국제출원 절차 및 관련 규정

· 조약 : PCT　· 규칙 : PCT Regulation　· RO : 수리관청　· IB : WIPO 국제사무국
· WO-ISA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 IPEA : 국제예비심사기관　· IPER : 국제예비심사 보고서




국제공개
우선일로부터 19개월
보충적 국제조사
보충적 국제조사
–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보충적 국제조사 청구 가능
· 규칙45bis.1(a), 45bis.2(c) : 국제사무국에 보충적 국제조사 청구 및 1개월 내 수수료 납부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아니오
국제예비심사
예
국제예비심사 청구 및 의견 송부
– 국제조사보고서와 WO-ISA 발송 후 3개월 내 또는 우선일부터 22개월 내에 심사 청구 및 WO-ISA에 대한 답변서를 IPEA에 제출 가능.
· 규칙54bis.1 : 국제예비심사 청구 기간
· 규칙43bis.1(a),(c) : WO-ISA에 대한 답변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기간내 제출
· 조약34(2)(b) : IPER 작성 전까지 명세서, 청구항, 도면 보정 가능
· 규칙69.1(b~e) :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같은 경우 조기 심사 가능
WO-ISA에 근거한 리포트
–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국제조사기관에서 작성된 WO-ISA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특허협력조약 제1장)' 이라는 이름으로 발행 WIPO에서 발행된 보고서는 출원인 및 지정관청에 송부
· 규칙 44 : WIPO의 보고서 발행 및 출원인 송부. 우선일로부터 30월 만료 후 지정국 송부
PCT 34조 보정
PCT 34조 보정
–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에 대한 보정 가능
· 조약34 및 규칙66 : 34조 보정 요청은 국제예비심사 청구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라도 국제예비심사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요청 가능
우선일로부터 20월 또는 30월 이상
국내진입

3. 국내단계

(1) 개 요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각 지정국 또는 선택국에서 국내단계를 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원인이 국내단계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지정국에 대하여는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우리나라는 31개월) - 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20개월 - 이내에 국제출원의 번역문제출, 수수료납부, 대리인선임 등 지정국의 국내법에서 정한 국내출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걸음 더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 및 절차 정보

PCT 국내진입을 위한 기한 및 요구되는 사항은 국가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국가별 정보를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appguide/)에 접속하여 원하는 국가의 National Chapter항목 중 Annex를 클릭하면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2) 한국특허청에 대한 국내단계 번역문 제출 등(DO(EO)/KR)

i) 번역문 제출

외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 PCT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서류와는 별도로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관은 번역문을 기초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제단계에서의 보정에 대한 번역문도 제출합니다.

국내서면제출기한(우선일로부터 31개월)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을 지정한 PCT 출원은 취하간주 되고,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이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ii) 국내수수료 납부

출원인은 번역문 제출시의 납부자번호로 해당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입한 국제출원이 무효가 됩니다.

iii)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은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을 통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의 약자

Ⅲ PCT 국제출원서 등 주요 서류작성 요령

1. 국제출원서 작성내용 및 요령 52
(1) 일반적 사항 52
(2) PCT 출원서(Request) 54
(3) 발명의 설명(Description) 66
(4) 청구범위(Claims) 68
(5) 요약서(Abstract) 69
(6) 도면(Drawings) 69
(7) 서열목록(Sequence Listings) 71

2. PCT-SAFE 및 ePCT를 이용한 출원 72
(1) PCT-SAFE에 의한 전자출원 72
(2) ePCT에 의한 전자출원 74

3.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작성내용 및 요령 75

4. 주요 중간서류 종류 및 작성 80
(1) 주요 중간서류의 종류 80
(2) 주요 중간서류의 작성 81
(3) 대체용지의 작성 84

Ⅲ. PCT 국제출원서 등 주요 서류작성 요령

1. 국제출원서 작성내용 및 요령

(1) 일반적 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 세로 297㎜ 크기(A4용지)의 매끄러운 백색용지로서 세로로 하여 한쪽면 만을 사용합니다.

나. 용지는 구김, 접힘 또는 찢어진 곳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출원서는 타자, 인쇄 또는 컴퓨터로 출력된 것으로 사진, 전자적 방법, 사진옵셋 및 마이크로필름에 의하여 직접 복사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라. 계량단위는 SI(m・kg・s) 단위로 표시(온도의 경우에는 켈빈(K) 또는 섭씨온도(℃) 중 어느 하나로 표시 가능)합니다.

마. 용어 및 기호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사용하되, 국제출원서류의 전체 내용에서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바. 출원서의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1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표시합니다(출원서 첫 쪽을 제외하고 '용지 번호'('Sheet No.....')에 2부터 기재).

사. 출원서는 쉽게 분리하고 다시 철할 수 있도록 집게 등을 사용하여 철합니다.

아. 출원서에는 「특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항 외의 어떠한 사항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자. 출원서를 타자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줄 간격은 1.5 문자의 폭으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세로 2.1㎜ 이상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검은색을 사용합니다.

차. 출원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1) 출원서의 편집 및 내용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과 일치하며, 대응하는 페이지에 동일정보와 실질적으로 같은 크기의 난을 둡니다.

2) 모든 난은 실선으로 그려야 합니다.

3) 수리관청 및 국제사무국이 사용하는 난은 인쇄서식과 같은 크기로 작성합니다.

한걸음 더

국제출원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다음은 PCT 국제출원서의 심사에서 흔하게 통지되는 오류 사항들과 올바른 기재 방법입니다.

1. 한국어 출원서에서 영어를 병기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PCT 국제출원서를 한국어로 진행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는 한국어 양식을 사용하여 한국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출원서 중에서 이름, 주소, 국적, 거주국은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해야 합니다.

* 발명의 명칭은 영어 병기하지 않고 한국어만 적습니다.

(작성례)

<table>
<tr><td colspan="2">제1기재란 발명의 명칭</td></tr>
<tr><td colspan="2">세탁기능 향상을 위한 보조장치 제조방법</td></tr>
<tr><td colspan="2">제2기재란 출원인 ☐ 이 난의 출원인은 발명자이기도 하다.</td></tr>
<tr><td rowspan="3">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홍길동
HONG, Gil-dong(성은 모두 대문자로 적고 쉼표하고 이름은 떨어지는 첫 자만 대문자로 적습니다. Gil-dong 또는 Gil Dong)

대한민국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국문주소와 영문주소의 방향은 역순으로 적습니다.)</td><td>전화번호
82-42-481-0000</td></tr>
<tr><td>팩스번호
82-41-481-0001</td></tr>
<tr><td>특허고객번호
4-2010-123456-7</td></tr>
</table>

2. 도면 등 이미지 파일은 모두 흑백으로 기준에 맞추어서 제출하자

명세서에 도면 등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할 때에는 반드시 기준 포맷 형식의 흑백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지 크기 및 해상도가 너무 작거나 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의 요구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권장포맷 : 흑백 Tiff, 압축방식 : CCITT Grooup 4, 해상도 : 300dpi, 최대사이즈 : 세로 225mm X 가로 170mm

*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컬러도면을 기준 포맷의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로→전자출원SW다운로드→PCT도면이미지 변환기)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장의 스캔이미지 파일을 첨부서류로 제출할 때는 스캔된 인장의 이미지가 선명한지 제출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PCT 출원서(Request)[7]

•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 참조 기호(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문자·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최대 12자 범위 내로 기재하며, 12자를 초과하는 문자는 수리관청 등이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제1기재란 : 발명의 명칭(Box No. I TITLE OF INVENTION)

짧고 명확하게 기재하되, 영어 기재 기준으로 **2단어 이상 7단어 이내**가 바람직하며 '명세서' 상의 발명의 명칭과 동일해야 합니다.

• 제2기재란 : 출원인(Box No. II APPLICANT)

가. 성명(명칭) 및 주소(Name and Address)

성명 또는 명칭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의 순서로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완전한 공식명칭을 기재하며, 주소는 우편송달이 가능한 완전한 주소를 한 가지만 기재하되, 국명 및 우편번호도 적습니다. 기재한 출원인이 동시에 발명자인 경우에는 '이 난의 출원인은 발명자이기도하다'('This person is also inventor')의 □에 X표시를 합니다. **한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에 대하여는 영어로 병기를 하여야 합니다.**

한걸음 더

출원인, 발명자 등 성명(명칭)의 영문 기재 방법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은 대문자로 기재하고 이름은 첫 자 및 띄어쓰는 두 번째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연인이 아닌 출원인의 명칭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 올바르게 표기한 성명(명칭)	♥ 잘못 표기한 성명(명칭)
HONG, Gil Dong	HONG, GILDONG
HONG, Gildong	HONG, gildong
HONG, Gil-Dong	Hong, Gil Dong
DAEJEON PATENT & LAW FIRM	Daejeon Patent & Law Firm

7) 영어 출원서의 경우 각 한국어 항목상의 대응항목과 동일하며, 한국어와 영어 출원서 중 일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나. 전화, 팩스번호 및 특허고객번호(Telephone No., Facsimile No.,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란에는 전화 및 팩스번호를 적되, 국가코드(한국은 82) 및 지역코드(서울의 경우 2)도 함께 적습니다.

다. 이메일 송부 동의(E-mail authorization)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서의 선행사본을 수신할 것을 허락하는 경우 이메일 송부동의 란의 □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란에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출원인의 '이메일 송부 동의' 란에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경우, 후에 대리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대리인이 없어지면 WIPO 통지서는 출원인의 이메일로 송부되지만 사실상 사임한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로 송부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의 정보란에는 출원인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국적(국가명)(State(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출원인의 국적을 적되, 국가의 국명 또는 'WIPO Standard ST.3과 PCT Applicant's Guide Annex A'에 따른 2문자 코드를 적습니다. 국적의 기재에 있어서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마. 거주국(국가명)(State(that is, country) of residence)

출원인의 거주국명을 적되, 국가의 국명 또는 'WIPO Standard ST.3과 PCT Applicant's Guide Annex A'에 따른 2문자 코드를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국명 또는 2문자 코드를 적습니다. 거주국은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바.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 of:)

위에 기재한 출원인이 어느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인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하되, 한 가지만 표시합니다. 두 번째 □ 안에 X표시한 경우에는 추가 기재란에 지정국명과 함께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다시 적습니다.

• 제3기재란 :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발명자(Box No. III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란에는 공동출원인 또는 발명자를 적되 다음 요령에 따릅니다.

❶ 제3기재란의 '□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발명자는 계속용지에 적는다.' 항목에 X표시합니다.

❷ 계속용지의 해당 항목 중 오른쪽의 '이 사람은:(This person is:)'란에는 적은 자가 오직 출원인인지 오직 발명자인지 또는 출원인인 동시에 발명자인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합니다.

❸ 그 외는 제2기재란(Box No. II)과 기재요령이 같습니다.

• 제4기재란 :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Box No. Ⅳ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가.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를 해당하는 □에 X표시하고, 그 사람의 성명(대리인의 경우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고, 복수의 대리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대리인을 맨 위에 기재합니다.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통지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주소로 행해집니다.

나. 대리인코드(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특허청에서 부여한 대리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이메일 송부 동의(E-mail authorization)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서의 선행사본을 수신할 것을 허락하는 경우로, 선행사본 수령 후 서면 통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에 X표시하고, 해당 통지서를 이메일로만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에 X표시합니다.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E-mail address'란에 적습니다. E-mail address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라. 통신용 주소(Address for correspondence)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나, 특정의 주소로 통지받고 싶을 경우에는 그 주소를 적고, 마지막 □ 안에 X표시합니다.



• 추가 기재란(Supplemental Box)

이 용지는 기재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선언서 제외) 사용하며, 이 Box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출원인 및/ 또는 발명자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Continuation of Box No III')이라고 적고, 출원인 성명, 국적, 거주국 등을 제3기재란(Box No. III)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기재합니다.

❷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의 하위 기재란 (Box No. II 또는 sub-boxes of No. III)에서 '추가 기재란에 표시된 국가'('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에 체크한 경우,
'제2기재란에 이어 계속'('Continuation of Box No. II') 또는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 ('Continuation of Box No. III') 또는 '제2기재란과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Continuation of Box No. II and III')과 같이 기재하고, 관련 출원인(들)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해당 출원인에 관한 지정국을 기재합니다.

❸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의 하위 기재란(Box No. II 또는 sub-boxes of No. III)에 발명자 또는 발명자/출원인이 지정국 일부에 대해서만 발명자 인 경우,
'제2기재란에 이어 계속'('Continuation of Box No. II') 또는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 ('Continuation of Box No III') 또는 '제2기재란과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Continuation of Box No. II and III')과 같이 기재하고, 관련 발명자(들)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해당 발명자에 관한 지정국을 기재합니다.

❹ 제4기재란(Box No. IV)에 기재한 대리인 외에 대리인이 더 있는 경우
'제4기재란에 이어 계속'('Continuation of Box No. IV')이라고 적고, 제4기재란(Box No. IV)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합니다.

❺ 우선권주장이 3개 이상인 경우
'제6기재란에 이어 계속'('Continuation of Box No. VI')이라고 적고, 제6기재란(Box No. VI)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합니다.

❻ 특정 지정국에서 추가특허,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으로 취급되기를 원하는 경우 관련된 각 지정국의 국명 또는 두문자 코드를 기재한 후 '추가특허'('patent of addition'), '추가증'('certificate of addition'), '추가발명자증'('inventor's certificate of addition') 또는 '추가실용증'('utility certificate of addition')을 기재하고 모특허 또는 모권리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❼ 미국에서 선출원의 계속출원 또는 일부 계속출원으로 취급되기를 원하는 경우 'US'라고 표시한 후 '계속출원'('continuation') 또는 '일부 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이라고 기재하고 모출원의 번호와 출원일을 기재합니다.

• 제5기재란 : 지정(Box No. V DESIGNATIONS)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내특허 및 지역특허 모두를 대상으로 국제출원일에 PCT에 기속되는 모든 체약국이 지정됩니다.

다만, 독일, 일본, 한국은 해당항목을 체크함으로써 각국의 어떤 종류의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아니한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법상 국내에 출원한 선출원이 있고 해당 선출원을 우선권 주장하여 국제출원하는 경우 국내에 출원한 선출원은 취하간주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특허와 유럽 특허와의 관계에서 자기지정이 취하되는 상황은 PCT 국제출원으로 독일이 지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유럽특허청의 지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걸음 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자기지정 제외

우리나라 특허법은 국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된 선출원은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제56조). PCT 출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국내 선출원을 기초로 PCT 국제출원하고 자기지정 제외를 하지 않는다면 선출원은 해당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6기재란 : 우선권 주장(Box No. VI PRIORITY CLAIM)

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출원국명(지역특허청 또는 수리관청)을 해당란에 적습니다.

나. 우선권주장이 4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기재란에 우선권 주장이 추가로 적혀 있음'란에 체크하고 추가 기재란에 추가합니다.

다. 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인증사본(우선권서류)을 특허청(수리관청)이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거나 국제사무국이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입수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려는 서류의 해당항목 □ 안에 X표시합니다.

라. 날짜는 서기에 의한 년·월·일을 적은 후 괄호 안에 일·월·년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 뒤에 마침표, 사선 또는 하이픈을 붙입니다.

• 제7기재란 : 국제조사기관(Box No. VII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가. 국제조사를 받기 원하는 국제조사기관의 국명을 기재합니다. 국가명은 2문자 코드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PCT 국제출원을 할 경우 선택 가능한 국제조사기관은 대한민국(KR), 오스트리아(AT), 호주(AU), 일본(JP)이 있습니다.

• 제7기재란의 계속 선조사 결과의 이용, 선조사에 대한 언급(Continuation of BOX No. VII USE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REFERENCE TO THAT SEARCH)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선조사가 있고 이에 대한 활용을 요청하려는 경우에 적으며 해당항목 □ 안에 X표시합니다.

가. 선조사 요청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이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선조사를 행한 기관 또는 관청을 적습니다.

나. 국제출원과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이 언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 설명서(Statement) 항목 □ 안에 X표시합니다.

다. '서류의 입수가능성'('Availability of documents')란에는 국제조사기관에서 입수 가능하므로 출원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에 대하여 각 해당항목 □ 안에 X표시합니다.

라. '선조사 결과 및 기타 서류의 사본 송부'('Transmit copy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and other documents')란에는 선조사가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수리관청으로 행동하는 관청과 동일한 관청에서 행해진 경우, 수리관청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 각 해당항목 □ 안에 X표시합니다.

• 제8기재란 : 선언서(Box No. VIII DECLARATION)

가. 다섯 개의 선언서 중 한 개라도 작성해서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선언서의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 □에 X표시를 하고, 오른쪽에는 해당 선언서의 제출매수를 기재합니다.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Box No. VIII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 선언서 기재요령

선언서는 모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국제출원서의 결격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면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 시 참고서류로 활용되어 그에 관한 해당국에서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즉 특정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국제단계에서 제출하여 국내단계 진입할 때 출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선언서 작성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선언서의 표준 문구는 공개되는 국제공개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어 출원은 한국어로, 영어 출원은 영어로 작성합니다. 다만,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가 라틴 언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 명칭을 병기해야 합니다. 즉, 한국어 출원에서는 표준 문구의 출원인 성명 및 주소는 한글과 영어를 병기해야 합니다.

선언서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8기재란 (i)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Box No. VIII(i) Declaration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 용도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되며,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에 오직 발명자로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로 적은 경우에는 해당 선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표준문구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조약규칙 4.17(i) 및 51bis.1(a)(i):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주소)의 ...(성명)은 해당 국제출원에서 보호받으려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영문

"Declaration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Rules 4.17(i) and 51bis.1(a)(i)):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 (name) of ... (address)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by way of [the]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2) 제8기재란 (ii)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Box No. VIII(ii)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 용도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합니다.

- 표준문구

"조약규칙 4.17(iv))에 따른 선언이 부적절한 경우, 국제출원일 당시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대한 선언(조약규칙 4.17(ii) 및 51bis.1(a)(ii)):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i) ...(주소)의 ...(성명)은 이 국제출원에서 보호받으려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ii)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iii)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iv)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v)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vi)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원 이름)이 발부한 법원명령
(vii)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따라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양도
(viii)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영문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Rules 4.17(ii) and 51bis.1(a)(ii)), in a case where the declaration under Rule 4.17 (iv) is not appropriate: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name) is entitled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by virtue of the following:
(i) ... (name) of ... (address)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by way of [the][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i) ... (name) [is] [was] entitled as employer of the inventor, ... (inventor's name)
(iii) an agreement between ... (name) and ... (name), dated ...
(iv) an assignment from ... (name) to ... (name), dated ...
(v) consent from ... (name) in favor of ... (name), dated ...
(vi) a court order issued by ... (name of court), effecting a transfer from ... (name) to ... (name), dated ...
(vii) transfer of entitlement from ... (name) to ... (name) by way of ... (specify kind of transfer), dated ...
(viii) the applicant's name changed from ... (name) to ... (name) on ... (date)"

- 기재요령

· 해당 선언서는 출원인의 자격이 국제출원일 전에 획득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선언서는 발명자에 관한 기재가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에 없을 경우에는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서와 합하여 1부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입문장은 다음과 같이 적고 나머지 문장은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서의 표준문구로 적습니다.

"조약규칙 4.17(iv))의 규정에 의한 선언서가 부적절할 경우, 국제출원일 당시 특허를 출원하고 취득할 출원인의 자격(조약규칙 4.17(ii) 및 51의2.1(a)(ii)) 및 발명자(조약규칙 4.17(i) 및 51의2.1(a)(i))에 관한 통합 선언서: "

영문

"Combined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Rules 4.17(ii) and 51bis.1(a)(ii)) and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Rules 4.17(i) and 51bis.1(a)(i)), in a case where the declaration under Rule 4.17(iv) is not appropriate:"

3) 제8기재란 (iii)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 자격에 관한 선언(Box No. VIII(iii)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claim the priority of the earlier application)

- 용도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 표준문구

"국제출원일 당시, 출원인이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아닌 경우 또는 출원인의 이름이 선출원을 제출한 후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은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조약규칙 4.17(iii) 및 51bis.1(a)(iii)):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원 번호... 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
(i) 출원인은 선출원에서 보호받으려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ii)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iii)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iv)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v)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vi)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원 이름)이 발부한 법원명령
(vii)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따라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양도"

영문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claim priority of the earlier application specified below, where the applicant is not the applicant who filed the earlier application or where the applicant's name has changed since the filing of the earlier application (Rules 4.17(iii) and 51bis.1(a)(iii)):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 (name) is entitled to claim priority of earlier application No. ... by virtue of the following:
(i) the applicant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was sought by way of the earlier application
(ii) ... (name) [is] [was] entitled as employer of the inventor, ... (inventor's name)
(iii) an agreement between ... (name) and ... (name), dated ...
(iv) an assignment from ... (name) to ... (name), dated ...
(v) consent from ... (name) in favor of ... (name), dated ...
(vi) a court order, issued by ... (name of court), effecting a transfer from ... (name) to ... (name), dated ...
(vii) transfer of entitlement from ... (name) to ... (name) by way of ... (specify kind of transfer), dated ...
(viii) the applicant's name changed from ... (name) to ... (name) on ... (date)"

- 기재요령
 · 해당 선언서는 출원인의 자격이 국제출원일 전에 획득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선언서는 우선권이 주장된 선출원을 한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이 후출원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과 다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예를 들면, 다섯명의 출원인이 있는 출원에서 그 중 한명이 선출원에 기재된 출원인과 다른 경우)

4) **제8기재란 (iv) 미국지정을 위한 발명자에 관한 선언**(Box No. VIII(iv) DECLARATION: INVENTORSHIP (only for the purposes of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용도

미국을 지정한 경우에만 기재하는 선언서입니다.

- 표준문구

동 선언서의 표준문구는 출원서에 정해진 양식에 따릅니다.

- 기재요령

· 비록 모든 발명자가 선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발명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 발명자의 주소, 거주지 등과 같은 사항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 및 거주지가 라틴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 병기를 하여야 합니다.

· 선언을 정정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동 선언서를 사용하되, 제목은 "추가 발명자 선언 조약규칙 4.17(iv) 및 51의2.1(a)(iv)" ("Supplemental declaration of inventorship (Rule 4.17(iv) and 51bis.1(a)(iv))")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제8기재란 (v) 신규성을 해치지 않는 개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Box No. VIII(v) DECLARATION: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 용도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간주되길 원하거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 합니다.

- 표준문구

"권리훼손이 없는 공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조약규칙 4.17(v) 및 51bis.1(a)(v)):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해당 국제출원에서 주장한 발명의 대상기술이 다음과 같이 공개되었음을 선언한다:
(i) 공개의 종류(해당하는 경우 포함)
(a) 국제박람회
(b) 공개
(c) 주장된 발명의 남용
(d) 기타: ...(기재)
(ii) 공개일: ...

(iii) 공개의 명칭(있는 경우): …
(iv) 공개 장소(있는 경우): …"

영문

"Declaration as to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Rules 4.17(v) and 51bis.1(a)(v)):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PCT/…],
…(name) declares that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the]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disclosed as follows:
(i) kind of disclosure (include as applicable):
(a) international exhibition
(b) publication
(c) abuse
(d) other: … (specify)
(ii) date of disclosure: …
(iii) title of disclosure (if applicable): …
(iv) place of disclosure (if applicable): …"

- 기재요령
 · 항목 (i)의 (a)(b)(c) 또는 (d), 항목 (ii)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목 (iii)과 (iv))는 관련 상황이 있는 경우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제8기재란 (i)에서 (v)의 계속 선언서(Continuation of Box No. VIII(i) to (v) DECLARATION)

- 제8기재란(Box No. VIII)의 (i)부터 (v)까지 선언서 작성공간이 부족한 경우 사용합니다.

• 제9기재란 : 체크리스트(Box No. IX CHECK LIST for PAPER filings)

이 용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제출원의 각 구성서류의 면수를 표시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하고 그 제출부수를 적습니다.

나. 국제공개 시 요약서와 함께 공개하도록 대표되는 도면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작성한 언어를 국제출원의 출원 언어란에 적습니다.

• 제10기재란 :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Box No. X SIGNATURE OF APPLICANT, AGENT OR REPRESENTATIVE)

출원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타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계산 용지(출원서 부속문서)(FEE CALCULATION SHEET(Annex to the Request))

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란에는 출원서 첫 쪽에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Applicant')란에는 출원인을 기재하되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출원인을 기재한 후 'et al.'(한국어로는 '등')을 기재합니다.

다. 수수료의 기재방법

❶ T에 송달료를 기재합니다.

❷ S에 조사료를 기입하고, 아래 밑줄에 선택한 국제조사기관을 기재합니다.

❸ 국제출원료

제9기재란에 적혀 있는 총 용지 매수를 기입한 후 i1에 30매까지 국제출원료 금액을, i2에 30매 초과매수와 초과 1매당 추가 금액을 기재하고, I에는 i1과 i2를 더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❹ 총금액(TOTAL)에는 T, S, I를 더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라. 한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서를 제출할 때 영어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MODE OF PAYMENT는 CASH에 X표시를 해야 합니다. 한국어 출원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발명의 설명(Description)

• 일반적 사항

가. 용지에는 다음과 같이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 용지의 상단 : 20mm 이상 40mm 이내
- 용지의 좌단 : 25mm 이상 40mm 이내
- 용지의 하단 및 우단 : 20mm 이상 30mm 이내

나.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다. 각 용지 좌측 여백의 정중앙에 5행마다 연속된 아라비아숫자로 문단 번호를 붙입니다.

라. 발명의 설명에는 출원서(Request)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을 첫머리에 표시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제목을 붙이고 기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❶ 기술분야(Technical Field)
발명의 관련 기술분야를 명시

❷ 배경기술(Background Art)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명시하고 가능한 한 해당 기술에 관한 문헌을 인용

❸ 발명의 개시(Disclosure of Invention)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기술하고 그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 관련하여 가지는 유리한 효과를 기재

❹ 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Drawings)
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

❺ 발명의 최선의 실시예(Best Mode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중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형태를 기재하되 적당한 경우에는 실시예를 이용하고 도면이 있을 때에는 그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

❻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
필요한 경우에 그 발명의 산업상 이용방법,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을 명시

❼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첨부합니다(*아래 (7)번 항목 안내 참조).
해당하는 경우 PCT 조약 시행세칙에 규정된 표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❽ Sequence Listing Free Text(서열목록 프리텍스트)
해당하는 경우 발명의 설명을 작성한 언어로 기재합니다.

마. 발명의 설명에는 화학식 또는 수식을 기재하거나 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화학식, 수식 또는 표를 바르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지를 가로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지를 가로로 사용할 때에 용지는 화학식·수식 또는 표의 상단이 용지의 좌측이 되도록 하고 세로로 하여 철합니다.

(4) 청구범위(Claims)

가.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발명의 설명의 최후 용지에 붙인 번호의 다음 번호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중앙에 붙입니다.

나. 청구범위(Claims)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명확·간결하게 기재하되,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 청구항의 수는 발명의 성질을 고려하여 타당한 수로 하고, 청구항의 수가 2이상인 경우에는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청구항에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라. 청구범위에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기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발명의 설명의 …에 기재한 것과 같이' 또는 '도면의 …에 표시한 것과 같이'와 같은 기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기술적 특징이 도면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한 다음에 관련 도면의 인용부호를 묶어 병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 종속항의 기재요령

❶ 1 또는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함과 동시에 추가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 합니다.

❷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하 '다수종속항'이라 한다)은 인용되는 청구항을 선택적으로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예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❸ 다수종속항은 다른 다수종속항에 인용될 수 없습니다.

❹ 같은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들은 가능한 한 인용되는 청구항 바로 뒤에 모아서 기재합니다.

❺ 위의 ❷, ❸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한 기재가 지정국의 국내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해당 지정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5) 요약서(Abstract)

가.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청구의 범위의 최후에 붙인 번호의 다음 번호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붙입니다.

나. 요약서(Abstract)에는 그 요약서에 관한 국제출원을 선행기술로서 조사할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선별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❶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❷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분야
❸ 기술적 과제의 해결방법의 요지
❹ 발명의 중요한 용도

다. 요약서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기재하되, 영어 기재를 기준으로 할 때 **50단어 이상 150단어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중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요약서에 기재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인용부호를 붙입니다.

마. 요약서에는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불확실한 효과 또는 용도에 관하여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6) 도면(Drawings)

가. 일반적 사항

❶ 여백은 적어도 용지의 상단 및 좌단에 25mm, 우단에 15mm, 하단에 10mm를 둡니다.

❷ 도면의 각 용지에는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는 사선으로 구분된 2개의 아라비아숫자로 이루어지며, 사선으로 구분된 좌측에는 용지의 번호를, 우측에는 용지의 합계수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중앙에 표시합니다.(예: 1/4, 2/4)

나. 도면에는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물'·'증기'·'개'·'폐'·'AB의 절단면' 등의 단어 또는 어구를 제외하고는 문자를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도면은 지워지지 않는 짙은 **흑색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와 선명한 선으로 착색없이 작성합니다.

라. 절단면은 평행사선으로 표시하되, 인용부호 및 인출선의 판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마. 도면의 3분의2 선축적에 의한 사진복제를 한 경우에도 모든 세부가 쉽게 식별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명료성을 가지도록 작성합니다.

바. 도면의 척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식을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사. 도면에 기재하는 모든 숫자문자 및 인출선은 간결하고 명확한 것으로 합니다.

아. 도면 중의 모든 선은 원칙적으로 제도용구를 사용하여 긋습니다.

자. 도면의 각 요소는 다른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그 도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면 중의 다른 요소와 같은 비율로 그려야 합니다.

차. 숫자 및 문자의 크기는 세로 3.2mm이상으로 합니다.

카. 2 이상의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도면별로 용지의 번호와는 관계없이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타. 도면에는 명세서에 사용하지 아니한 인용부호를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파. 도면에 다수의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인용부호와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목록을 기재한 별지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사항

☞ 국내 특허 출원은 컬러 도면의 제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PCT 출원에서는 반드시 흑백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출원 하면서 스캔된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 흑백이 아닌 그레이 스케일 형식의 파일 첨부도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변환기를 이용하면 컬러로 그려진 도면파일을 흑백으로 편리하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로 ▶ 전자출원 시작하기 ▶ 전자출원 SW 다운로드 ▶ PCT도면 이미지 변환기)

(7) 서열목록(Sequence Listings)

가. 서열목록은 **명세서와 별도의 페이지로 작성하여** 출원서류의 마지막(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다음)에 배치합니다.

나. 서열목록은 반드시 **서열목록 작성기**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통상의 워드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 전자출원의 경우 작성된 서열목록을 PCT-SAFE상에 첨부하면 배치 및 페이지 부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작성된 서열목록을 가.에서 설명한 위치에 출원서류의 일부로 첨부하고 작성된 서열목록을 담은 전자매체 1부를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서열목록에는 앞서의 출원서, 명세서 등과 별도로 서열목록만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용지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1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한걸음 더

서열목록 작성 시 필요한 프로그램

서열목록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서열목록 작성기' 프로그램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로 ▶ 전자출원 시작하기 ▶ 전자출원 SW 다운로드 ▶ 서열목록 작성기)

2. PCT-SAFE 및 ePCT를 이용한 출원

(1) PCT-SAFE에 의한 전자출원

가. 개 요

PCT-SAFE(Secure Applications Filed Electronically)는 PCT 국제출원의 전자출원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PCT 국제출원을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300 **스위스프랑(CHF)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작성 및 제출

PCT-SAFE에 의한 전자출원은 출원서 및 발명의 설명·청구범위·요약서·도면 등 모든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자적 매체에 저장한 후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출원이 이루어집니다. PCT-SAFE를 이용하여 전자출원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로 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걸음 더

PCT-SAFE를 이용한 출원시 필요한 프로그램

PCT 국제출원서를 작성하고 PCT-SAFE를 이용하여 출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내려 받기 및 활용이 필요합니다.

- 통합명세서 작성기(NK-Editor) : PCT 출원의 내용 부분이 되는 발명의 설명, 요약서, 청구의 범위, 도면을 작성·첨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제공개용 번역문, 국제조사용번역문 및 의견서, 진술서, 설명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 PCT-SAFE : PCT 출원서를 작성하고 '통합명세서 작성기'를 이용해 만든 문서를 결합시켜 온라인 출원을 진행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한 프로그램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로 ▶ 출원신청 ▶ PCT 국제출원 ▶ 전자출원 SW 설치)

PCT-SAFE를 이용한 일반적인 PCT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통합명세서 작성기를 이용하여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요약서를 작성하고 도면을 첨부하는 등 PCT 국제출원서에 기재될 내용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문서는 .xml 의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❷ PCT-SAFE를 이용하여 PCT 국제출원서의 항목을 기재한 후 통합명세서 작성기로 작성한 .xml 파일을 결합 시킵니다.

❸ 서열목록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app 형태의 파일을 결합 시킵니다.

❹ 전자서명을 하여 절차를 완료시킵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전자서명 방식에 따라 .sg1, .zg1의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되거나 .wad, hash.txt의 두 개 파일이 생성됩니다.

유의사항

☞ PCT-SAFE를 이용해 작성한 파일을 저장할 때는 영어 파일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ctappl.wad 등의 이름을 선택해야 하며 피시티.wad와 같은 한글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저장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❺ 특허로에 접속하여 PCT-SAFE를 통해 최종 생성한 두 개의 파일을 제출함으로써 출원을 완료 합니다.

(2) ePCT에 의한 전자출원

가. 개 요

ePCT에 의한 전자출원은 WIPO ePC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PCT 출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PCT-SAFE가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컴퓨터에 설치한 후 이용하는 방식인 반면 ePCT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온라인 상에서 PCT 출원서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PCT-SAFE 또는 ePCT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작성하고 수리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PCT를 이용한 출원 서비스는 '17년 중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나. 작성 및 제출

ePCT를 이용한 PCT 출원 방법은 PCT-SAFE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WIPO에서 운영하는 ePCT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므로 사용자 계정과 전자 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명의 설명 등을 첨부하는 방법은 PCT-SAFE와 동일하므로 '통합명세서 작성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ePCT를 이용한 일반적인 PCT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통합명세서 작성기를 이용하여 발명의 설명 등 PCT 국제출원서에 기재될 내용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문서는 .xml 의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❷ 사전에 승인된 사용자 계정 및 전자 인증서를 이용하여 ePCT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국제출원서 항목을 기재합니다. 통합명세서 작성기로 작성한 .xml 파일을 결합 시킵니다.
❸ 서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app 형태의 파일을 결합 시킵니다.
❹ 전자서명을 하여 절차를 완료시킵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전자서명 방식에 따라 두 개 파일이 생성됩니다.
❺ 특허로에 접속하여 최종 생성한 두 개의 파일을 제출합니다.

한걸음 더

ePCT 사용 설명서

ePCT 사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로 ▶ 출원신청 ▶ PCT 국제출원 ▶ 명세서 서식작성 페이지 하단부 '알아둡시다' ▶ 사용설명서)

3.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작성내용 및 요령

• IPEA/_____

출원인이 선택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을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첫 쪽 상단 좌측에 위치한 'IPEA/_____'란에 적습니다.

•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문자·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서류참조기호를 출원인이 임의로 정하여, 최대 12자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제1기재란 : 국제출원의 표시(Box No. I IDEN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가. 국제출원번호(International application No.)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국제출원번호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번호를 적고(예 : PCT/ KR2017/001234), 국제출원번호의 통지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수리관청의 명칭을 『RO/KR』 과 같이 적습니다.

나. 국제출원일(일/월/년), 우선일(최선일)(일/월/년)(International filing date(day/month/year), (Earliest)Priority date(day/month/year))

국제출원일 및 우선일(해당하는 경우)을 적되, 서기에 의한 연·월·일을 적은 후 괄호 안에 일·월·년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 뒤에 마침표, 사선 또는 하이픈(-)을 붙입니다. 다른 기원 또는 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기에 의한 일자를 함께 씁니다.(예 : 2017년 9월 4일(04.09.2017))

다. 발명의 명칭(Title of invention)

국제출원서(REQUEST)에 기재한 발명을 명칭을 기재하되,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새로운 발명의 명칭이 정해진 경우에는 변경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제2기재란 : 출원인(Box No. II APPLICANT(S))

선택국에 대한 출원인은 모두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합니다. '오직 출원인'('applicant only') 뿐 아니라, '출원인 겸 발명자'('applicant and inventor')도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오직 발명자'('inventor only')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 성명(명칭) 및 주소(Name and address)

국제출원서(REQUEST)에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전에 수리관청에 성명(명칭), 주소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기재합니다. **한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에 대하여는 영어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이 3인 이상인 경우 하단에 있는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Further applicants are indicated on a continuation sheet')의 앞 □ 안에 X표시하고 다음 쪽에 계속하여 출원인을 적습니다. 출원인의 기재요령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이메일 송부 동의'('E-mail authorization')란은 국제사무국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송신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 적되, 서면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을 메일로 송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번째 □ 안에 X표시하고,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음)에는 두 번째 □ 안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란에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나. 국적(국가명), 거주국(국가명)(State(that is, country)of nationality, State(that is, country) of residence)

출원인의 국적 및 거주국을 두문자 코드(예: KR)로 기재합니다.

다. 전화번호, 팩스번호(Telephone No., Facsimile No.)

국가코드 및 지역번호도 함께 기재합니다.(예: 한국, 서울의 경우 +82-2-568-8155).

라. 특허고객번호(Applicant's registration number with the Office)

출원인이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제3기재란 : 대리인 또는 대표자; 통신용 주소(Box No. Ⅲ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가. 아래에 적은 자는 □ 대리인 □ 대표자로서(The following person is □ agent □ common representative)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자가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모든 출원인을 대표하여 선임된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에 표시하고, 각 경우에 따라 해당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합니다.

나. 성명(명칭) 및 주소(Name and address), 전화번호(Telephone No.), 대리인코드(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제2기재란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해당 대리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다. 통신용 주소(Address for correspondence)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았고, 제2기재란의 출원인 주소와 달리 특별히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통신을 위하여 별도 주소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제4기재란 : 국제예비심사의 기초(Box No. Ⅳ BASIS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국제예비심사의 기초가 되는 보정에 관한 사항과 예비심사언어를 표시합니다.

가. 보정에 관한 설명(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

- 1.번 항목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무엇에 기초하여 언제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청구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국제출원 당시의 원출원에 기초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크박스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 국제예비심사청구 시 보정을 고려하여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하면 됩니다.
- 조약 제19조 보정서를 제출한 후 이를 기초로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약 제19조 보정서의 사본을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2.번 항목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조약 제19조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조약 제34조에 의한 보정을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고려하고 해당 제19조 보정은 고려하지 않고 심사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체크합니다.

- 3.번 항목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에 조약 제19조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서의 제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해당 보정서의 제출 가능성을 열어 놓기를 원할 때 이 체크박스에 표시하여 국제예비심사 개시를 연기하도록 요청합니다.
- 4.번 항목은 출원인이 Rule 54*bis*.1(a)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만료 전에 국제예비심사가 개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나.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언어(Language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언어를 기재합니다. 통상 출원 언어를 기재하고, 첫 번째 □에 표시하면 됩니다.

• 제5기재란 : 국가의 선택(Box No. Ⅴ ELECTION OF STATES)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PCT 제2장에 기속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됩니다.

• 제6기재란 : 체크리스트(Box No. Ⅵ CHECK LIST)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서류의 목록별 분량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란입니다. 제출되는 서류의 매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하단부의 체크박스는 첨부되는 서류명 앞의 네모 박스에 표시 합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계산용지'('Fee calculation sheet') 앞의 네모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수수료 계산 용지를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에 첨부하여 제출 합니다.

• 제7기재란 :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Box No. Ⅶ SIGNATURE OF APPLICANT,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원인 중 최소 1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누락된 기명날인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계산용지(FEE CALCULATION SHEET)

- '국제출원번호'('International application No.') 및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첫 쪽의 각 해당 항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출원인’(‘Applicant’)란에는 출원인을 기재하고,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출원인 1인 및 ‘et al.’(한국어는 ‘등’)을 기재 합니다.
- 수수료 P(Box P)에는 예비심사료 금액을 기재하고, 취급료 H(Box H)에는 취급료 금액을 기재합니다.
- ‘총금액’(‘Total Box’)에는 수수료 P 및 취급료 H의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 한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 할 때 영어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Mode of Payment’의 ‘cash’ 항목에 X표시를 해야 합니다. 한국어 신청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주요 중간서류 종류 및 작성

중간서류란 출원이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일괄하여 일컫는 표현입니다. PCT 출원 이후 사용되는 주요 중간서류의 종류 및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중간서류의 종류

별지서식	서식명
별지 제35호서식	서류제출서
별지 제36호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별지 제37호서식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별지 제39호서식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의견(소명)제출서
별지 제41호서식	REQUEST
별지 제41호의2서식	PCT 출원서
별지 제42호서식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
별지 제43호서식	발명의 설명
별지 제44호서식	청구범위(CLAIMS, 請求範圍)
별지 제45호서식	요약서
별지 제46호서식	도면
별지 제47호서식	수수료납부서
별지 제48호서식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	취하서
별지 제50호서식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PCT DEMAND
별지 제51호의2서식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별지 제52호서식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 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책자/통계」 – 「민원서식」 – 「분야별 서식」 – 「출원심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중간서류의 작성

가. 대리인의 선임

- 국제출원 후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1부를 작성한 후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합니다.

나. 포괄위임장의 제출

- 국제출원을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를 작성한 후 포괄위임장 원본 1부를 첨부·제출하여 포괄위임 사실을 등록합니다.
- 포괄위임장을 제출한 후(또는 동시에) 국제출원을 할 경우
 사전에 등록된 포괄위임장 사본을 국제출원서 3부(서면 출원의 경우)에 각각 첨부 합니다.

다. 성명 등의 변경신고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국적 또는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영어로 병기**를 하여야 합니다.

라. 명의변경의 신고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영어로 병기**를 하여야 합니다.

마.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

- '보정(보완, 정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체용지 3부(서면 출원의 경우)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수리관청에 제출하고,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에,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 또는 그 보정서, 조약 제19조 또는 제34조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서는 **우선일부터 26월 이내에 관할 관청 또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바. 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납부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 계산 용지(Fee calculation sheet)'를 첨부(출원과 동시에 요금 납부 시에는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서면 출원의 경우)하고 이 때 받은 접수번호로 다음날 까지 수수료를 납부 합니다.

사.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 수수료 납부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납한 경우 수리관청은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서식(Form) PCT/RO/133).
- 이에 대해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수료납부서'('국제출원수수료 보정' 항목에 체크)를 작성한 뒤 '수수료 계산 용지'('Fee calculation sheet)'를 첨부(서면 출원의 경우)하여 제출한 후 이 때 받은 접수번호로 다음날 까지 요금을 납부합니다.
- 위 보정통지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은 취하간주 됩니다.

아. 우선권서류의 제출

-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이 특허청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 **출원서에 우선권서류 송달신청 의사를 표시(제6기재란, Box No. VI)하거나**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작성('우선권서류송달'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국외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우선권서류제출' 항목을 선택)를 작성하고 해당 우선권서류 각1부를 첨부하여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자.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 자진보정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6개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6개월과 우선일부터 16개월 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를 위해서는 위의 기간 내에 '보정(보완, 정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 통지에 의한 보정(수리관청에서 우선권주장의 보정요구를 한 경우)
 보정기간 내에 '보정(보완, 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간 내에 보정이 없을 경우 우선권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수리관청은 그 취지를 선언합니다. 다만, 보정의 대상이 선출원번호의 미기재, 우선권주장의 기재사항과 우선권서류상의 기재사항의 불일치, 우선권 기간의 경과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하는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차. 국제출원 등의 취하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으며, 별지 제49호서식인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카. 발명의 설명 등의 보정서 제출[8)]

- 제출시기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제출시, 심사관 견해서 수령 후, 또는 출원인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다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기한(통상 우선일로부터 28월)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 제출 합니다.
- 보정의 범위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에 대하여 보정이 가능하며, 국제출원 시의 원출원에 기재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보정(보완,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정에 의한 대체용지(2부) 및 보정에 관한 설명서한(1부)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보정의 대상이 청구범위인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범위 전체를 세트로 제출해야 합니다.

8) 보정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 요령은 정리 6 참조

(3) 대체용지의 작성

국제출원서를 제출한 후 국제출원의 진행 단계를 거치면서 출원서를 보정, 정정하거나 기재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출원인은 대체용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용지는 최초 제출한 출원서 중 보정, 정정, 추가, 삭제해야 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기재한 출원서 페이지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대체용지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가. 대체용지의 작성 및 제출 범위

대체용지를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최초 출원서류 중 변경되는 항목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변경되는 항목이 없는 페이지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정 또는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 세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체 페이지 삭제 시 대체용지 작성 방법

보정이 용지 한 장을 전부 취소해야 할 정도인 경우에는 서한에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 대체용지의 용지번호 작성 방법

- 용지가 추가되는 경우

 1매 이상의 용지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각각의 용지는 이전 장의 용지 번호를 앞에 적고 사선을 표시한 후 추가되는 용지 번호를 일련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합니다. 변경되지 않은 용지 다음에 추가되는 첫 번째 장의 용지번호는 항상 1번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 10/1, 15/1, 15/2, 15/3 등)

한걸음 더

대체용지 작성 요령

대체용지를 작성할 때는 편집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급적 페이지를 추가하지 않고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걸음 더

대체용지 작성 사례

발명의 설명(Description) 페이지의 2, 3, 청구항 페이지의 4, 도면 페이지 2/3, 3/3을 보정한 결과, 발명의 설명 2페이지 및 3 페이지가 변경되고 뒤에 각각 1장의 용지가 추가되었으며, 청구항 부분은 보정은 있었지만 페이지의 추가가 없고, 도면은 2/3 페이지가 삭제되어 3/3 페이지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보정 전의 페이지

1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2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3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4 청구범위 (Claim)	5 요약서 (Abstract)
1/3 도면 (Drawing)	2/3 도면 (Drawing)	3/3 도면 (Drawing)		

· 보정 후의 페이지

1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2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2/1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3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3/1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4 청구범위 (Claim)	5 Abstract	1/3 Drawing	[2/3] 〈Deleted〉 도면(Drawing)	3/3 도면 (Drawing)

☞ 보정 후 제출할 대체용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보정을 했을 때 대체용지는 페이지 2, 2/1, 3, 3/1(이상 발명의 설명 부분), 4(청구범위 부분), 2/3, 3/3(이상 도면 부분) 쪽을 그대로 용지번호를 붙여 대체용지로서 제출합니다. 삭제되는 도면 2/3쪽은 백지에 [2/3]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삭제〉 (영어 출원은 〈Deleted〉)를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의 약자

Ⅳ

PCT 국제출원 출원서 작성 예시

Ⅳ. PCT 국제출원 출원서 작성 예시

한글 PCT 국제출원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15.7.29.>

PCT 용도

PCT

출원서

아래 서명자는 이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처리될 것을 청구합니다.

수리관청 전용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수리관청 명칭 및 "PCT 국제출원"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PCTA 123
(희망하는 경우 기재) (최대 12문자)

제1기재란 발명의 명칭

세탁기능 향상을 위한 보조장치 제조방법

제2기재란 출원인 ☐ 이 난의 출원인은 발명자이기도 하다.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홍길동
HONG, Gil Dong
대한민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전화번호 +82-42-400-1000
팩스번호 +82-42-400-1001
특허고객번호 4-2010-123456-7

이메일 송부 동의: 아래 난 중 하나에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발행한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하고자 할 경우 이 난에 적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 서면 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 송부; 또는 ☐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는다)

이메일 주소: abc@abc.co.kr

국적 *(국가명)*: 대한민국 KR | 거주국 *(국가명)*: 대한민국 KR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 ☑ 모든 지정국 ☐ 추가기재란에 표시된 국가

제3기재란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

☑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는 계속용지에 적는다.

제4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

아래에 적은 자는 관할 국제기관에 대하여 우측에 표시된 자격으로 출원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선임되었다. ☑ 대리인 ☐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이변리
LEE, Byeon Ri
대한민국 062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
1 Yeoksam-ro Gangnam-gu, Seoul 06252, Republic of Korea

전화번호 +82-2-210-1000
팩스번호 +82-2-210-1003
대리인코드 9-2016-123456-7

이메일 송부 동의: 아래 난 중 하나에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발행한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하고자 할 경우 이 난에 적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 서면 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 송부; 또는 ☐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는다)

이메일 주소: dpp123@dpplaw.com

☐ **통신용 주소**: 이 난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고, 대신 위의 기재 공간에 특별히 통지서 송달을 위한 별도의 주소를 적는 경우에 표시한다.

서식 PCT/RO/101(첫 번째 용지)(2015년 7월) *기재요령 참조*

210㎜×297㎜[백상지 80g/㎡]



용지 번호2.....

제3기재란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이 사람은: ☐ 오직 출원인 ☐ 출원인겸 발명자 ☑ 오직 발명자*(이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경우, 아래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출원인코드
박새롬 PARK, Sae Rom 대한민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국적 *(국가명)*:	거주국 *(국가명)*: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 ☐ 모든 지정국 ☐ 추가기재란에 표시된 국가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이 사람은: ☐ 오직 출원인 ☐ 출원인겸 발명자 ☐ 오직 발명자*(이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경우, 아래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출원인코드
국적 *(국가명)*:	거주국 *(국가명)*: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 ☐ 모든 지정국 ☐ 추가기재란에 표시된 국가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이 사람은: ☐ 오직 출원인 ☐ 출원인겸 발명자 ☐ 오직 발명자*(이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경우, 아래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출원인코드
국적 *(국가명)*:	거주국 *(국가명)*: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 ☐ 모든 지정국 ☐ 추가기재란에 표시된 국가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이 사람은: ☐ 오직 출원인 ☐ 출원인겸 발명자 ☐ 오직 발명자*(이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경우, 아래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출원인코드
국적 *(국가명)*:	거주국 *(국가명)*: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 ☐ 모든 지정국 ☐ 추가기재란에 표시된 국가	

☐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는 계속용지에 적는다.

서식 PCT/RO/101(계속 용지)(2015년 7월) *기재요령 참조*

용지 번호

추가 기재란 이 *추가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별도의 계속 기재란이 제공되는 제8기재란(i)에서 (v)를 제외하고, 어떤 기재란에서 모든 정보를 적기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제()기재란에 이어 계속"(괄호 안에 기재란 번호 표기)이라는 표시를 한 후, 기재 공간이 부족했던 그 특정 기재란의 설명에 맞게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적는다. 특히:*

(i)만약 ***출원인 및/또는 발명자로 두 사람 이상이 적히야 하나*** *"계속 용지"가 제공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이라고 표시한 후, 제3기재란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각 사람별로 적는다. 아래에서 거주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이 기재란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ii) 만약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의 ***"추가 기재란에 표시된 국가"*** *항목이 체크되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제2기재란에 이어 계속" 또는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 또는 "제2기재란과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이라는 표시를 한 후 , 관련 출원인의 이름을 명시하고, 그 옆에 해당 출원인에 관한 지정국(및/또는 ARIPO, 유라시아, 유럽 또는 OAPI 특허)을 명시한다;*

(iii) 만약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의 하위 기재란에 ***발명자 또는 발명자/출원인이 지정국 일부에 대해서만 발명자인 경우:*** *(상황에 따라) "제2기재란에 이어 계속" 또는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 또는 "제2기재란과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이라는 표시를 한 후, 관련 발명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그 옆에 해당 발명자에 관한 지정국(및/또는 ARIPO, 유라시아, 유럽 또는 OAPI 특허)을 명시한다;*

(iv) 만약 제4기재란에 적은 대리인 이외에 ***추가 대리인이 있을 경우:*** *"제4기재란에 이어 계속"이라는 표시를 한 후, 각 추가 대리인에 대하여 제4기재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는다;*

(v) 만약 제6기재란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세 개를 넘는 경우:*** *"제6기재란에 이어 계속"이라는 표시를 한 후, 각 선출원에 대해 제6기재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는다.*

2. 만약 출원인이, 해당 국제출원이 특정 지정국에서 추가특허,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위한 출원으로 취급될 것을 희망한다는 표시를 하려는 경우: 해당 지정국의 국가명 또는 두 문자 국가코드를 표기한 후, ***"추가특허"****(patent of addition),* ***"추가증"****(certificate of addition),* ***"추가발명자증"****(inventor's certificate of addition) 또는* ***"추가실용증"****(utility certificate of addition)이라는 표기 및 모출원, 모특허, 또는 기타 모권리의 번호 및 모특허 또는 기타 모권리의 허여일자, 또는 모출원의 출원일을 적는다(규칙 4.11(a)(i), 49의2.1(a) 또는 (b)).*

3. 만약 출원인이, 해당 국제출원이 미국에서 선출원의 계속출원 또는 일부 계속출원으로서 취급될 것을 희망한다는 표시를 하려는 경우: "US"라고 표기한 후, ***"계속출원"****(continuation) 또는* ***"일부 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이라는 표기와 함께 모출원의 번호와 출원일을 적는다(규칙 4.11(a)(ii), 49의2.1(d)).*

이 페이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시킵니다.

서식 PCT/RO/101(추가 용지)(2015년 7월) *기재요령 참조*



용지 번호3.....

제5기재란 지정

이 출원서의 제출로, **규칙 4.9(a)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지역특허 및 국내특허 모두를 위하여 해당 국제출원일에 PCT에 기속되는 **모든 체약국이 지정된다**.
다만,

☐ DE 독일은 어떠한 종류의 국내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않는다**.

☐ JP 일본은 어떠한 종류의 국내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않는다**.

☑ KR 대한민국은 어떠한 종류의 국내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않는다**.

(위 체크박스는 출원서 제출 시 또는 규칙 26의2.1에 따라 그 후 출원서 제6기재란에 위 특정 관련 체약국의 국내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국내 선출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지정 제외 시 이의 취소 불가능)).

제6기재란 우선권주장

다음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한다:

선출원일 *(일/월/년)*	선출원번호	선출원국명의 표시: 국내출원: 파리협약 당사국명 또는 WTO 회원국명	지역출원: 지역관청명	국제출원: 수리관청명
항목 (1) 2016년 1월 12일 (12.01.2016)	10-2016-0001234	대한민국 KR		
항목 (2)				
항목 (3)				

☐ 추가 기재란에 우선권주장이 추가로 적혀 있음

우선권서류의 제출:

☑ **수리관청**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항목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선출원의 인증등본을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이 국제출원의 수리관청이 해당 항목의 선출원이 출원된 관청과 동일한 관청인 경우에만 표시).*

☑ 모든 항목 ☐ 항목 (1) ☐ 항목 (2) ☐ 항목 (3) ☐ 기타, 추가 기재란 참조

☐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항목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경우 아래에 적은 접근코드를 이용하여 선출원의 인증등본을 전자도서관에서 입수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선출원이 전자도서관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표시).*

☐ 항목 (1) 접근코드 _____ ☐ 항목 (2) 접근코드 _____ ☐ 항목 (3) 접근코드 _____ ☐ 기타, 추가 기재란 참조

우선권의 회복: 수리관청에 대하여 위에서 또는 추가 기재란에서 우선권 주장 항목 (_____)에 적은 선출원의 우선권 회복을 신청한다. *(제6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인용에 의한 보완: 조약 제11조(1)(iii)(d) 또는 (e)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의 요소, 또는 규칙 20.5(a)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일부가 이 국제출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약 제11조(1)(iii) 규정의 요소 중 하나 이상이 수리관청에 최초로 접수된 날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요소 또는 부분은 규칙 20.6에 따른 확인을 조건으로, 규칙 20.6과 관련하여 이 국제출원에 있어서 인용에 의해 보완된다.

제7기재란 국제조사기관

국제조사기관 (ISA) 선택 *(국제조사를 수행할 권한 있는 국제조사기관이 둘 이상일 경우, 선택한 기관을 표시한다; 두 문자 코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ISA / KR

서식 PCT/RO/101(두 번째 용지)(2015년 7월) *기재요령 참조*

용지 번호4.....

제7기재란의 계속　　선조사 결과의 이용, 선조사에 대한 언급

☐ 제7기재란에 표시된 국제조사기관에 대하여 아래 적은 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신청한다*(제7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에서 한 건을 초과하는 선조사 결과의 이용 부분 참조).*

출원일*(일/월/년)*　　출원번호　　국가*(또는 지역관청)*

☐ **설명서(규칙 4.12(ii))**: 이 국제출원과 선조사가 이루어진 출원은, (서로 다른 언어로 출원된 경우 그 사실을 제외하고는), 서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서류의 입수가능성**: 아래의 서류는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형태 및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의한 입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다(규칙 12의2.1(f)):

- ☐ 선조사보고서의 사본*
- ☐ 선출원의 사본
- ☐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된 선출원의 번역문
- ☐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된 선조사보고서의 번역문
- ☐ 선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알고 있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이 입수가능한 문서를 아래에 적는다):*

☐ **선조사 결과 및 기타 서류의 사본 송부** *(선조사가 위에 적은 국제조사기관이 아니라, 수리관청으로 행동하는 관청과 같은 관청에서 이루어진 경우)*: **수리관청**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규칙 12의2.1(c)):

- ☐ 선조사보고서의 사본*
- ☐ 선출원의 사본
- ☐ 선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 선조사보고서가 전자도서관을 통한 입수가 가능하지 않고, 또한 수리관청이 송부하는 경우도 아닌 때에는,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12의2.1(a))(*체크리스트 11.번 및 제7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출원일*(일/월/년)*　　출원번호　　국가*(또는 지역관청)*

☐ **설명서(규칙 4.12(ii))**: 이 국제출원과 선조사가 이루어진 출원은, (서로 다른 언어로 출원된 경우 그 사실을 제외하고는), 서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서류의 입수가능성**: 아래의 서류는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형태 및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의한 입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다(규칙 12의2.1(f)):

- ☐ 선조사보고서의 사본*
- ☐ 선출원의 사본
- ☐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된 선출원의 번역문
- ☐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된 선조사보고서의 번역문
- ☐ 선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알고 있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이 입수가능한 문서를 아래에 적는다):*

☐ **선조사 결과 및 기타 서류의 사본 송부** *(선조사가 위에 적은 국제조사기관이 아니라, 수리관청으로 행동하는 관청과 같은 관청에서 이루어진 경우)*: **수리관청**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규칙 12의2.1(c)):

- ☐ 선조사보고서의 사본*
- ☐ 선출원의 사본
- ☐ 선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 선조사보고서가 전자도서관을 통한 입수가 가능하지 않고, 또한 수리관청이 송부하는 경우도 아닌 때에는,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12의2.1(a))(*체크리스트 11.번 및 제7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 추가 선조사는 계속 용지에 적는다.

제8기재란　　선언서

다음 **선언서**가 제8기재란(i)에서 (v)에 첨부되어 있다 *(아래 체크박스 중 해당되는 것에 표시한 후 오른쪽 열에 각 선언서의 매수를 표기한다):*　　선언서 매수

☐	제8기재란 (i)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 :	
√	제8기재란 (ii)	국제출원일에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 :	1
☐	제8기재란 (iii)	국제출원일에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	
√	제8기재란 (iv)	발명자 선언(미국에 대한 지정의 경우에 한정함) :	1
☐	제8기재란 (v)	신규성을 해치지 않는 개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 :	

서식 PCT/RO/101(두 번째 용지)(2015년 7월)　　*기재요령 참조*

용지 번호

제8기재란(i)　　선언서: 발명자의 신원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1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 (규칙 4.17(i) 및 51의2.1(a)(i)):

이 페이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시킵니다.

☐ 이 선언서가 다음 용지 "제8기재란(i)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i))(2015년 7월)　　*기재요령 참조*

용지 번호5.....

제8기재란(ii) 선언서: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2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국제출원일에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 (규칙 4.17(iv)에 의한 선언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규칙 4.17(ii) 및 51의2.1(a)(ii)):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홍길동(HONG, Gil Dong)은 다음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2016년 5월 20일(20.05.2016)에 박새롬(PARK, Sae Rom)으로부터 홍길동(HONG, Gil Dong)에게 양도

☐ 이 선언서가 다음 용지 "제8기재란(ii)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ii))(2015년 7월) *기재요령 참조*

용지 번호

제8기재란(iii)　　선언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3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국제출원일에 출원인이 아래 명시된 선출원의 출원인이 아니거나 선출원 후 출원인의 성명(명칭)이 바뀌었을 경우,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 (규칙 4.17(iii) 및 51의2.1(a)(iii)):

이 페이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시킵니다.

☐ 이 선언서가 다음 용지 "제8기재란(iii)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iii))(2015년 7월)　　*기재요령 참조*

용지 번호6.....

제8기재란(iv) 선언서: 발명자 선언 (미국에 대한 지정에 한정함)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4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지정을 위한
발명자 선언 (규칙 4.17(iv) 및 51의2.1(a)(iv))

본인은 이 선언서에 기재된 청구된 발명의 최초 발명자(아래에 단 한명의 발명자만 명시된 경우) 또는 최초 공동 발명자(아래에 둘 이상의 발명자가 명시된 경우)임을 믿으며 이를 선언한다.

이 선언서는 해당 선언서가 그 일부를 구성하는 국제출원을 대상으로 한다(선언서를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이 선언서는 국제출원번호 PCT/ 을 대상으로 한다(규칙 26의3에 따라 선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은 상기에서 확인된 국제 출원이 본인이 만들었거나 또는 본인이 권한 부여를 받아 만들었음을 선언한다.

본인은 거주지 및 우편물 수령 주소가 성명 옆에 표시된 바와 같음을 선언한다.

본인이 이 선언서를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US 규약 Title 18의 제 1001 section에 의거하여, 벌금형 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그 둘 다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성 명: 박새롬(PARK, Sae Rom)

거 주 지: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도시 및 미국 주 또는 국가명(해당하는 경우)

우편주소: 대한민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발명자의 서명: *박새롬(발명자 서명을 합니다.)* 날짜: 2016년 12월 26일(26.12.2016)
(서명은 대리인이 아니라, 발명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성 명:

거 주 지:
(도시 및 미국 주 또는 국가명(해당하는 경우)

우편주소:

.

발명자의 서명: 날짜:
(서명은 대리인이 아니라, 발명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성 명:

거 주 지:
(도시 및 미국 주 또는 국가명(해당하는 경우)

우편주소:

.

발명자의 서명: 날짜:
(서명은 대리인이 아니라, 발명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 이 선언서가 다음 용지 "제8기재란(iv)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iv))(2015년 7월) *기재요령 참조*

용지 번호

제8기재란(v)　　선언서: 신규성을 해치지 않는 게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5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신규성을 해치지 않는 게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서(규칙 4.17(v) 및 51의2.1(a)(v)):

이 페이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시킵니다.

☐ 이 선언서는 다음 용지 "제8기재란(v)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v))(2015년 7월)　　*기재요령 참조*

용지 번호

제8기재란(i)에서 (v)의 계속 선언서

*제8기재란(iv)에 **셋 이상의 발명자가 명기되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8기재란(i)에서 (v) 중 모든 정보를 적기에 하기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 "제8기재란()에 이어 계속" (괄호 안에 기재란 항목번호를 표기)이라는 표시를 하고 기재공간이 부족했던 각 기재란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적는다. 두 가지 이상의 선언서에 대해 추가 공간이 필요할 경우, 각 선언서 별로 별도의 계속 기재란이 사용되어야 한다.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페이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시킵니다.

서식 PCT/RO/101(선언서에 대한 계속 용지)(2015년 7월) *기재요령 참조*



용지 번호7.....

제9기재란 서면출원을 위한 체크 리스트-이 용지는 서면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이 국제출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용지 수	이 국제출원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첨부되어 있다**(*해당 항목의 체크박스에 표기를 하고 오른쪽 열에 각 항목의 개수를 표기한다*):	용지 수
(a) 출원서 서식 PCT/RO/101 (모든 선언서 및 추가 용지 포함) :	7	1. [√] 수수료 계산 용지 :	1
(b) 발명의 설명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 제외. 아래 (f) 참조) :	24	2. [√] 개별위임장 원본 :	1
(c) 청구범위 :	3	3. [] 포괄위임장 원본 :	
(d) 요약서 :	1	4. [] 포괄위임장 사본; 참조번호 :	
(e) 도면 (있는 경우) . :	4	5. [] 제6기재란에 다음 항목으로 명시된 우선권서류 :	
(f)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 (있는 경우) :		6. [] 국제출원 번역문 (*번역문의 언어*): :	
		7. [] 기탁된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별도의 표시 사항(*번역문의 언어*): :	
		8. [] (*원쪽에서 (f)항목이 표시된 경우에만*)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규칙 13의3에 따른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제출된** 물리적 데이터 매체에 담긴 서열목록의 전자적 형태의 사본(부속서류 C/ST 25 텍스트 파일) (*물리적 데이터 매체의 형태 및 개수*) :	
		9. [] (*원쪽에서 (f)항목이 표시된 경우에만*) 서면으로 제출 시 "규칙 13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 정보가 국제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술서 :	
		10. [] 선조사보고서의 사본(규칙 12의2.1(a)) :	
		11.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	
총 용지 매수 : 39			
요약서에 수반되어야 할 **도면 번호**: 3		국제출원의 **출원 언어**: **한국어**	

제10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의 성명(명칭)을 적고, 그 옆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출원서를 통해 서명자의 자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도 표시*).

이변리
LEE, Byeon RI *이변리*

수리관청 전용

1.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의 실제 접수일:	2. 도면: [] 접수: [] 미접수:
3.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완성하는 서류 또는 도면의 추후 기간 내 제출에 따른 정정된 실제 접수일:	
4. PCT 제11조(2)에 따라 제출이 요구된 보완서로서 기간 내 제출된 보완서의 접수일:	
5. 국제조사기관 (관할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ISA /	6. [] 조사료 납부 시까지 지연된 조사용 사본의 송부

국제사무국 전용

국제 사무국의 기록원본 접수일:

서식 PCT/RO/101(마지막 용지-서면)(2015년 7월) *기재요령 참조*

이 용지는 국제출원의 일부가 아니며 국제출원 용지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PCT

수수료 계산 용지

(감면된 수수료가 적용되는 경우, 감면된 수수료 금액을 적어야 한다)

출원서 부속문서

수리관청 전용

국제출원번호

수리관청의 날짜도장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PCTA 123

출원인 홍길동 HONG, Gil Dong

소정의 수수료 계산

1. 송 달 료 45,000원 T

2. 조 사 료 450,000원 S

국제조사는 KR 에 의해 수행될 것임.

3. 국제출원료

제9기재란에 적혀 있는 총 용지 매수를 기입한다: 39

i1 처음 30매에 대한 지정 금액 1,330CHF i1

i2 9 (30매를 초과하는 용지매수) x 15CHF (용지당 수수료) = 135CHF i2

i1 및 i2에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I란에 기입한다. 1,465CHF I

4. 선조사 서류에 대한 수수료*(해당하는 경우)* ES

5. 총 금 액

T, S, I(i1+i2) 및 ES에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금액란에 기입한다. 495,000원 + 1,465CHF (총금액)

납부방법 등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5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납부서」 (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납부서 제출 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위 총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후의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우편으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서 제출에 따라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식 PCT/RO/101 부속문서(2015년 7월) *기재요령 참조*



영어 PCT 국제출원서

PCT

REQUEST

The undersigned requests that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be processed according to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For receiving Office use only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International Filing Date

Name of receiving Office and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if desired) (12 characters maximum)* CHOCO 95549

Box No. I TITLE OF INVENTION

PROCESS FOR FOLDING WRAPPING PAPER FOR CHOCOLATES

Box No. II APPLICANT ☐ This person is also inventor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he country of the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no State of residence is indicated below.)*

CANDY WRAP UNLIMITED, INC.
300 Colorado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1-4307
United States of America

Telephone No. (+1-301) 876-5432

Facsimile No. (+1-301) 876-5555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E-mail authorization: Marking one of the check-boxes below authorizes the receiving Office,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to use the e-mail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to send, notifications issued in respect of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that e-mail address if those offices are willing to do so.

☐ as advance copies followed by paper notifications; or ☒ exclusively in electronic form (no paper notifications will be sent).

E-mail address: candy@anumma.com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U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US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 all designated States ☐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Box No. III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are indicated on a continuation sheet.

Box No. IV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The person identified below is hereby/has been appointed to act on behalf of the applicant(s) before the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ies as: ☒ agent ☐ common representative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DAVIS, Catherine
2500 Virgi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037-1902
United States of America

Telephone No. (+1-301) 557-3054

Facsimile No. (+1-301) 557-3060

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44,111

E-mail authorization: Marking one of the check-boxes below authorizes the receiving Office,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to use the e-mail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to send, notifications issued in respect of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that e-mail address if those offices are willing to do so.

☐ as advance copies followed by paper notifications; or ☒ exclusively in electronic form (no paper notifications will be sent).

E-mail address: davispatents@anumma.com

☐ **Address for correspondence:** Mark this check-box where no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is/has been appointed and the space above is used instead to indicate a special address to which correspondence should be sent.

Form PCT/RO/101 (first sheet) (July 2015)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 . 2 . . .

Box No. III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If none of the following sub-boxes is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he country of the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no State of residence is indicated below.)*

JONES, Mary
1600 South Eads Street
Arlington, Virginia 22202-2913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person is:
- ☐ applicant only
- ☐ applicant and inventor
- ☒ inventor only *(If this check-box is marked, do not fill in below.)*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 all designated States ☐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he country of the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no State of residence is indicated below.)*

This person is:
- ☐ applicant only
- ☐ applicant and inventor
- ☐ inventor only *(If this check-box is marked, do not fill in below.)*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 all designated States ☐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he country of the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no State of residence is indicated below.)*

This person is:
- ☐ applicant only
- ☐ applicant and inventor
- ☐ inventor only *(If this check-box is marked, do not fill in below.)*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 all designated States ☐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he country of the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no State of residence is indicated below.)*

This person is:
- ☐ applicant only
- ☐ applicant and inventor
- ☐ inventor only *(If this check-box is marked, do not fill in below.)*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 all designated States ☐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are indicated on another continuation sheet.

Form PCT/RO/101 (continuation sheet) (July 2015)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Supplemental Box *If the Supplemental Box is not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1. *If, in any of the Boxes, except Boxes Nos. VIII(i) to (v) for which a special continuation box is provided,* ***the space is insufficient*** *to furnish all the information: in such case, write "Continuation of Box No...." (indicate the number of the Box) and furnish the information in the same manner as required according to the captions of the Box in which the space was insufficient, in particular:*

(i) ***if more than one person is to be indicated as applicant and/or inventor*** *and no "continuation sheet" is available: in such case, write "Continuation of Box No. III" and indicate for each additional person the same type of information as required in Box No. III. The country of the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no State of residence is indicated below;*

(ii) *if, in Box No. II or in any of the sub-boxes of Box No. III, the indication*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is checked: in such case, write "Continuation of Box No. II" or "Continuation of Box No. III" or "Continuation of Boxes No. II and No. III" (as the case may be), indicate the name of the applicant(s) involved and, next to (each) such name, the State(s) (and/or, where applicable, ARIPO, Eurasian, European or OAPI patent) for the purposes of which the named person is applicant;*

(iii) *if, in Box No. II or in any of the sub-boxes of Box No. III,* ***the inventor or the inventor/applicant is not inventor for the purposes of all designated States****: in such case, write "Continuation of Box No. II" or "Continuation of Box No. III" or "Continuation of Boxes No. II and No. III" (as the case may be), indicate the name of the inventor(s) and, next to (each) such name, the State(s) (and/or, where applicable, ARIPO, Eurasian, European or OAPI patent) for the purposes of which the named person is inventor;*

(iv) *if, in addition to the agent(s) indicated in Box No. IV, there are* ***further agents****: in such case, write "Continuation of Box No. IV" and indicate for each further agent the same type of information as required in Box No. IV;*

(v) *if, in Box No. VI, there are* ***more than three earlier applications whose priority is claimed****: in such case, write "Continuation of Box No. VI" and indicate for each additional earlier application the same type of information as required in Box No. VI.*

2. *If the applicant intends to make an indication of the wish tha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e treated, in certain designated States, as an application for a patent of addition, certificate of addition, inventor's certificate of addition or utility certificate of addition: in such case, write the name or two-letter code of each designated State concerned and the indication "****patent of addition,****" "****certificate of addition,****" "****inventor's certificate of addition****" or "****utility certificate of addition,****" the number of the parent application or parent patent or other parent grant and the date of grant of the parent patent or other parent grant or the date of filing of the parent application (Rules 4.11(a)(i) and 49bis.1(a) or (b)).*

3. *If the applicant intends to make an indication of the wish tha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e trea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continuation or continuation-in-part of an earlier application: in such case, writ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US" and the indication "****continuation****" or "****continuation-in-part****" and the number and the filing date of the parent application (Rules 4.11(a)(ii) and 49bis.1(d)).*

TO BE INCLUDED ONLY IF NECESSARY

Form PCT/RO/101 (supplemental sheet) (July 2015)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3...

Box No. V DESIGNATIONS

The filing of this request **constitutes under Rule 4.9(a) the designation** of all Contracting States bound by the PCT on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for the grant of every kind of protection available and, where applicable, for the grant of both regional and national patents.

However,

☐ DE Germany **is not designated** for any kind of national protection

☐ JP Japan **is not designated** for any kind of national protection

☐ KR Republic of Korea **is not designated** for any kind of national protection

(The check-boxes above may only be used to exclude (irrevocably) the designations concerned if, at the time of filing or subsequently under Rule 26bis.1,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in Box No. VI a priority claim to an earlier national application filed in the particular State concerned, in order to avoid the ceasing of the effect, under the national law, of this earlier national application.)

Box No. VI PRIORITY CLAIM AND DOCUMENT

The priority of the following earlier application(s) is hereby claimed:

Filing date of earlier application *(day/month/year)*	Number of earlier application	Where earlier application is:		
		national application: country or Member of WTO	regional application: regional Offic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ceiving Office
item (1) 05 August 2014 (05.08.2014)	14/274,821	US		
item (2) 12 December 2014 (12.12.2014)	14187654.4		EP	
item (3)				

☐ Further priority claims are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Furnishing the priority document(s):

☒ The **receiving Office** is requested to prepare and transmit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 certified copy of the earlier application(s) *(only if the earlier application(s) was filed with the receiving Office which, for the purposes of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the receiving Office)* identified above as:

☐ all items ☒ item (1) ☐ item (2) ☐ item (3) ☐ other, see Supplemental Box

☐ The **International Bureau** is requested to obtain from a digital library a certified copy of the earlier application(s) identified above, using, where applicable, the access code(s) indicated below *(if the earlier application(s) is available to it from a digital library)*:

☐ item (1) access code _____ ☐ item (2) access code _____ ☐ item (3) access code _____ ☐ other, see Supplemental Box

Restore the right of priority: the receiving Office is requested to restore the right of priority for the earlier application(s) identified above or in the Supplemental Box as item(s) (_____). *(See also the Notes to Box No. VI; further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to support a request to restore the right of priority.)*

Incorporation by reference: where an elemen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1(1)(iii)(d) or (e) or a part of the description, claims or drawings referred to in Rule 20.5(a) is not otherwise contained in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but is completely contained in an earlier application whose priority is claimed on the date on which one or more el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1(1)(iii) were first received by the receiving Office, that element or part is, subject to confirmation under Rule 20.6,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the purposes of Rule 20.6.

Box No. VII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Choice of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if more than on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 competent to carry out the international search, indicate the Authority chosen; the two-letter code may be used)*:

ISA/ EP

Form PCT/RO/101 (second sheet) (July 2015)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Continuation of Box No. VII **USE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REFERENCE TO THAT SEARCH**

☒ The ISA indicated in Box No. VII is requested to take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es) indicated below (*see also Notes to Box VII; use of results of more than one earlier search*).

Filing date *(day/month/year)*	Application Number	Country *(or regional Office)*
12 December 2014 (12.12.2014)	14187654.4	EP

☐ **Statement (Rule 4.12(ii))**: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application in respect of which the earlier search was carried out except, where applicable, that it is filed in a different language.

☒ **Availability of documents**: the following documents are available to the ISA in a form and manner acceptable to it and therefore do not need to be submitted by the applicant to the ISA (Rule 12*bis*.1(f)):

- ☒ a copy of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 ☒ a copy of the earlier application,
- ☐ a translation of the earlier application into a language which is accepted by the ISA,
- ☐ a translation of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into a language which is accepted by the ISA,
- ☒ a copy of any document cited in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If known, please indicate below the document(s) available to the ISA):*

☐ **Transmit copy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and other documents** *(where the earlier search **was not** carried out by the ISA indicated above but by the same Office as that which is acting as the receiving Office)*: the **receiving Office** is requested to prepare and transmit to the ISA (Rule 12*bis*.1(c)):

- ☐ a copy of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 ☐ a copy of the earlier application,
- ☐ a copy of any document cited in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 Where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are neither available from a digital library nor transmitted by the receiving Office,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submit them to the receiving Office (Rule 12*bis*.1(a)) (*See item 11. in the check-list and also Notes to Box No. VII*).

Filing date *(day/month/year)*	Application Number	Country *(or regional Office)*

☐ **Statement (Rule 4.12(ii))**: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application in respect of which the earlier search was carried out except, where applicable, that it is filed in a different language.

☐ **Availability of documents**: the following documents are available to the ISA in a form and manner acceptable to it and therefore do not need to be submitted by the applicant to the ISA (Rule 12*bis*.1(f)):

- ☐ a copy of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 ☐ a copy of the earlier application,
- ☐ a translation of the earlier application into a language which is accepted by the ISA,
- ☐ a translation of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into a language which is accepted by the ISA,
- ☐ a copy of any document cited in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If known, please indicate below the document(s) available to the ISA):*

☐ **Transmit copy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and other documents** *(where the earlier search **was not** carried out by the ISA indicated above but by the same Office as that which is acting as the receiving Office)*: the **receiving Office** is requested to prepare and transmit to the ISA (Rule 12*bis*.1(c)):

- ☐ a copy of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 ☐ a copy of the earlier application,
- ☐ a copy of any document cited in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 Where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are neither available from a digital library nor transmitted by the receiving Office,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submit them to the receiving Office (Rule 12*bis*.1(a)) (*See item 11. in the check-list and also Notes to Box No. VII*).

☐ Further earlier searches are indicated on a continuation sheet.

Box No. VIII DECLARATIONS

The following **declarations** are contained in Boxes Nos. VIII (i) to (v) *(mark the applicable check-boxes below and indicate in the right column the number of each type of declaration)*:			Number of declarations
☐ Box No. VIII (i)	Declaration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	
☒ Box No. VIII (ii)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	1
☐ Box No. VIII (iii)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claim the priority of the earlier application	:	
☒ Box No. VIII (iv)	Declaration of inventorship (only for the purposes of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1
☐ Box No. VIII (v)	Declaration as to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	

Sheet No.

Box No. VIII (i) DECLARATION: IDENTITY OF THE INVENTOR

The declaration must conform to the standardized wording provided for in Section 211; see Notes to Boxes Nos. VIII, VIII (i) to (v) (in general) and the specific Notes to Box No.VIII (i). If this Box is not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Declaration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Rules 4.17(i) and 51*bis*.1(a)(i)):

NOT INCLUDED

(not needed since the inventor is named in Box No. III)

☐ This declaration is continued on the following sheet, "Continuation of Box No. VIII (i)".

Form PCT/RO/101 (declaration sheet (i)) (July 2015)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 . 5

Box No. VIII (ii) DECLARATION: ENTITLEMENT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The declaration must conform to the standardized wording provided for in Section 212; see Notes to Boxes Nos. VIII, VIII (i) to (v) (in general) and the specific Notes to Box No. VIII (ii). If this Box is not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Rules 4.17(ii) and 51*bis*.1(a)(ii)), in a case where the declaration under Rule 4.17(iv) is not appropriate: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CANDY WRAP UNLIMITED, INC., is entitled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by virtue of the following:

an assignment from JONES, Mary, to CANDY WRAP UNLIMITED, INC., dated 10 April 2015 (10.04.2015).

☐ This declaration is continued on the following sheet, "Continuation of Box No. VIII (ii)".

Form PCT/RO/101 (declaration sheet (ii)) (July 2015)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Box No. VIII (iii) DECLARATION: ENTITLEMENT TO CLAIM PRIORITY

The declaration must conform to the standardized wording provided for in Section 213; see Notes to Boxes Nos. VIII, VIII (i) to (v) (in general) and the specific Notes to Box No. VIII (iii). If this Box is not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claim the priority of the earlier application specified below, where the applicant is not the applicant who filed the earlier application or where the applicant's name has changed since the filing of the earlier application (Rules 4.17(iii) and 51*bis*.1(a)(iii)):

TO BE INCLUDED ONLY IF NECESSARY

☐ This declaration is continued on the following sheet, "Continuation of Box No. VIII (iii)".

Form PCT/RO/101 (declaration sheet (iii)) (July 2015)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6

Box No. VIII (iv) DECLARATION: INVENTORSHIP (only for the purposes of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declaration must conform to the following standardized wording provided for in Section 214; see Notes to Boxes Nos. VIII, VIII (i) to (v) (in general) and the specific Notes to Box No.VIII (iv). If this Box is not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Declaration of inventorship (Rules 4.17(iv) and 51*bis*.1(a)(iv)) for the purposes of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hereby declare that I believe I am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f which it forms a part (if filing declaration with application).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if furnishing declaration pursuant to Rule 26*ter*).

I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identified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made or authorized to be made by me.

I hereby acknowledge that any willful false statement made in this declaration is punishable under 18 U.S.C. 1001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5) years, or both.

Name: JONES, Mary

Residence: Arlington, Virginia
(city and either US state, if applicable, or country)

Mailing Address: 1600 South Eads Street
Arlington, Virginia 22202-2913
United States of America

Inventor's Signature: *Mary Jones* Date: 01 August 2015 (01.08.2015)
(The signature must be that of the inventor, not that of the agent)

Name:

Residence:
(city and either US state, if applicable, or country)

Mailing Address:

Inventor's Signature: Date:
(The signature must be that of the inventor, not that of the agent)

Name:

Residence:
(city and either US state, if applicable, or country)

Mailing Address:

Inventor's Signature: Date:
(The signature must be that of the inventor, not that of the agent)

☐ This declaration is continued on the following sheet, "Continuation of Box No. VIII (iv)".

Form PCT/RO/101 (declaration sheet (iv)) (July 2015)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Box No. VIII (v) DECLARATION: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The declaration must conform to the standardized wording provided for in Section 215; see Notes to Boxes Nos. VIII, VIII (i) to (v) (in general) and the specific Notes to Box No. VIII (v). If this Box is not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Declaration as to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Rules 4.17(v) and 51*bis*.1(a)(v)):

TO BE INCLUDED ONLY IF NECESSARY

☐ This declaration is continued on the following sheet, "Continuation of Box No. VIII (v)".

Form PCT/RO/101 (declaration sheet (v)) (July 2015)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Continuation of Box No. VIII (i) to (v) DECLARATION

*If **the space is insufficient** in any of Boxes Nos. VIII (i) to (v) to furnish all the information, including in the case where **more than two inventors are to be named** in Box No. VIII (iv), in such case, write "Continuation of Box No. VIII ..." (indicate the item number of the Box) and furnish the information in the same manner as required for the purposes of the Box in which the space was insufficient.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in respect of two or more declarations, a separate continuation box must be used for each such declaration. If this Box is not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TO BE INCLUDED
ONLY IF NECESSARY

Form PCT/RO/101 (continuation sheet for declaration) (July 2015)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7

Box No. IX CHECK LIST for PAPER filings – this sheet is only to be used when fil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on **PAPER**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a) request form PCT/RO/101 (including any declarations and supplemental sheets)	7
(b) description (excluding any sequence listing part of the description, see (f), below)	24
(c) claims	3
(d) abstract	1
(e) drawings (if any)	4
(f) sequence listing part of the description (if any)	
Total number of sheets	39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item(s) *(mark the applicable check-boxes below and indicate in right column the number of each item)*:	Number of items
1. ☒ fee calculation sheet	1
2. ☒ original separate power of attorney	1
3. ☐ original general power of attorney	
4. ☐ copy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reference number:	
5. ☒ priority document(s) identified in Box No. VI as item(s) 2	1
6. ☐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into *(language)*:	
7. ☐ separate indications concerning deposited microorganism or other biological material	
8. ☐ *(only where item (f) is marked in the left column)* copy in electronic form (Annex C/ST.25 text file) on physical data carrier(s) of the sequence listing, not forming par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hich is **furnished only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search** under Rule 13*ter* *(type and number of physical data carriers)*	
9. ☐ *(only where item (f) (in the left column) and item 8 (above) are marked)* a statement confirming that "the information recorded in electronic form submitted under Rule 13*ter* is identical to the sequence listing a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filed on paper	
10. ☐ copy of results of earlier search(es) (Rule 12*bis*.1(a))	
11. ☐ other *(specify)*:	

Figure of the drawings which should accompany the abstract:	3	**Language of fil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English

Box No. X SIGNATURE OF APPLICANT,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Next to each signature, indicate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and the capacity in which the person signs (if such capacity is not obvious from reading the request).

Catherine Davis

Catherine Davis

For receiving Office use only

1. Date of actual receipt of the purported international application:	2. Drawings: ☐ received:
3. Corrected date of actual receipt due to later but timely received papers or drawings completing the purported international application:	
4. Date of timely receipt of the required corrections under PCT Article 11(2):	☐ not received:
5.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f two or more are competent): ISA /	6. ☐ Transmittal of search copy delayed until search fee is paid

For International Bureau use only

Date of receipt of the record copy by the International Bureau:

Form PCT/RO/101 (last sheet – paper) (July 2015)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Box No. IX CHECK LIST for EFS-Web filings - this sheet is only to be used when fil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with RO/US via **EFS-Web**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a) request form PCT/RO/101 (including any declarations and supplemental sheets) :	
(b) description (excluding any sequence listing part of the description, see (f), below) :	
(c) claims :	
(d) abstract :	
(e) drawings (if any) :	
(f) sequence listing part of the description in the form of an **image file** (e.g. PDF) :	
Total number of sheets (including the sequence listing part of the description if **filed as an image file**) :	
(g) sequence listing part of the description	
☐ filed in the form of an **Annex C/ST.25 text file**	
☐ WILL BE filed separately on physical data carrier(s), on the same day and in the form of an **Annex C/ST.25 text file**	
Indicate type and number of physical data carrier(s)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item(s) *(mark the applicable check-boxes below and indicate in right column the number of each item)*:	Number of items
1. ☐ fee calculation sheet :	
2. ☐ original separate power of attorney :	
3. ☐ original general power of attorney :	
4. ☐ copy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reference number: :	
5. ☐ priority document(s) identified in Box No. VI as item(s) :	
6. ☐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into *(language)*: :	
7. ☐ separate indications concerning deposited microorganism or other biological material :	
8. ☐ *(only where item (f) is marked in the left column)* copy of the sequence listing in electronic form (Annex C/ST.25 text file) not forming par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ut **furnished only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search** under Rule 13*ter* :	
9. ☐ *(only where item (f) in the left column) and item 8 (above) are marked)* a statement confirming that "the information recorded in electronic form submitted under Rule 13*ter* is identical to the sequence listing a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filed via EFS-Web: :	
10. ☐ copy of results of earlier search(es) (Rule 12*bis*.1(a)) . . :	
11. ☐ other *(specify)*: :	

Figure of the drawings which should accompany the abstract:

Language of fil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ox No. X SIGNATURE OF APPLICANT,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Next to each signature, indicate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and the capacity in which the person signs (if such capacity is not obvious from reading the request).

TO BE USED ONLY FOR EFS-WEB FILINGS

For receiving Office use only

1. Date of actual receipt of the purported international application:	2. Drawings: ☐ received: ☐ not received:
3. Corrected date of actual receipt due to later but timely received papers or drawings completing the purported international application:	
4. Date of timely receipt of the required corrections under PCT Article 11(2):	
5.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f two or more are competent): ISA /	6. ☐ Transmittal of search copy delayed until search fee is paid

For International Bureau use only

Date of receipt of the record copy by the International Bureau:

Form PCT/RO/101 (last sheet – EFS) (July 2015)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This sheet is not part of and does not count as a shee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PCT

FEE CALCULATION SHEET

Annex to the Request

For receiving Office use only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Date stamp of the receiving Office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CHOCO 95549

Applicant: CANDY WRAP UNLIMITED, INC., et al.

CALCULATION OF PRESCRIBED FEES

(Applicants may be entitled to a reduction of certain fees as indicated in the PCT Fee Tables (http://www.wipo.int/pct/en/fees.pdf))

1. TRANSMITTAL FEE	USD 240 [T]	
2. SEARCH FEE	USD 2,125 [S]	
International search to be carried out by: EP		
3. INTERNATIONAL FILING FEE		
Enter total number of sheets indicated in Box No IX: 39		
[i1] Fixed amount for the first 30 sheets	1,384 [i1]	
[i2] 9 (number of sheets in excess of 30) x 16 (fee per sheet) =	144 [i2]	
Add amounts entered at i1 and i2 and enter total at I	1,528 [I]	
(Applicants from certain States are entitled to a reduction of 90% of the international filing fee (see http://www.wipo.int/pct/en/fees/fee_reduction.pdf). Where the applicant is (or all applicants are) so entitled, the total to be entered at I is 10% of the international filing fee.)		
4. FEE FOR PRIORITY DOCUMENT *(if applicable)*	[P]	
5. FEE FOR RESTORATION OF THE RIGHT OF PRIORITY *(if applicable)*	[RP]	
6. FEE FOR EARLIER SEARCH DOCUMENTS *(if applicable)*	[ES]	
7. TOTAL FEES PAYABLE Add amounts entered at T, S, I, P, RP and ES, and enter total in the TOTAL box	USD 3,893 TOTAL	

MODE OF PAYMENT *(Not all modes of payment may be available at all receiving Offices)*

☐ credit card *(details should not be included on this sheet)* ☒ authorization to charge deposit or current account (see below) ☐ bank transfer ☐ cash

☐ postal money order ☐ check ☐ revenue stamps ☐ other *(specify)*:

AUTHORIZATION TO CHARGE (OR CREDIT) DEPOSIT OR CURRENT ACCOUNT

(This mode of payment may not be available at all receiving Offices)

☒ Authorization to charge the total fees indicated above.

☒ *(This check-box may be marked only if the conditions for deposit or current accounts of the receiving Office so permit)* Authorization to charge any deficiency or credit any overpayment in the total fees indicated above.

☐ Authorization to charge the fee for priority document.

Receiving Office: RO/ US

Deposit or Current Account No.: 12-3456

Date: 04 August 2015 (04.08.2015)

Name: Catherine Davis

Signature: *Catherine Davis*

Form PCT/RO/101 (Annex) (July 2015)

See Notes to the fee calculation sheet

V

참고자료

- PCT 국제출원절차 지원업무관련 연락처 116
- PCT 체약국 현황 (2016.12. 현재, 151개국) 118
- 공개된 PCT 국제출원의 검색 및 확인 방법 119

Ⅴ. 참고자료

PCT 국제출원절차 지원업무관련 연락처

(1) 특허청(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관청)

-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 팩　　스 : 042-472-3473(수리관청),
 042-481-8578 · 042-472-7140(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기관)
- 전　　화 :

관련 분류		전화번호
국제출원 준비단계		특허고객콜센터 : 1544-8080
서식작성 및 서식작성기 이용		
전자출원		
국제출원 후 처리과정 및 방식심사	수리관청,	(042-481) 5208/8752/8770/5762/8552
	국제조사, 예비심사	(042-481) 8652
	지정관청	(042-481) 3553/8756/5281/5202
실체심사(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		해당 서류(보고서)에 기재된 심사관 전화번호

(2) PCT 국제출원 관련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 관	역 할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 특허청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우)35208	(1)특허청 정보 참조	(1)특허청 정보 참조
	지정(선택) 관청			
WIPO 국제사무국	국제사무국	34, chemin des Colombettes, Geneva, Switzerland	(41-22) 338-8338	(41-22) 338-8339
	수리관청		(41-22) 338-9222	(41-22) 910-0610
오스트리아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Dresdner Straβ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43-1) 53424-0	(43-1) 53424-200
일본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4-3, Kasumig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81-3) 3592-1308	(81-3) 3501-6803
호주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61-2) 6283-2999	-



(3) PCT관련 질의에 대한 WIPO 헬프데스크 정보

PCT 일반 안내	전 화 : 41 22 338 83 38 팩 스 : 41 22 338 83 39 이메일 : pct.infoline@wipo.int
PCT 절차 (IB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국제공개 오류연락 포함)	전 화 : 41 22 338 74 01 팩 스 : 41 22 338 82 70
RO/KR 출원*(PT01)	전 화 : 41 22 338 74 01 팩 스 : 41 22 338 70 90 이메일 : pt01.pct@wipo.int
RO/IB (IB에 국제출원한 경우)	전 화 : 41 22 338 92 22 팩 스 : 41 22 910 06 10 이메일 : ro.ib@wipo.int
ePCT 헬프 데스크	전 화 : 41 22 338 95 23 이메일 : ePCT@wipo.int
PCT 간행물 관련	팩 스 : 41 22 740 18 12 이메일 : epublications.mail@wipo.int
WIPO 교환번호	전 화 : 41 22 338 91 11
PCT관련 WIPO 사이트	http://www.wipo.int/pct/en/
PCT-SAFE 관련 사이트	http://www.wipo.int/pct-safe
ePCT 사이트	http://www.wipo.int/ePCT

* 특정 국제출원에 대한 WIPO 담당자 확인 및 연락처는 WIPO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WIPO 홈페이지 ▶ PCT ▶ Contacts ▶ PCT information Service ▶ 본문 설명 중 'contact the "authorized officer" directly'를 클릭)

PCT 체약국 현황(2016.12. 현재, 151개국)



AE	United Arab Emirates	CY	Cyprus(EP)[2]	IN	India	MK	The former Yougoslav Republic of Macedonia(EP)	SD	Sudan(AP)
AG	Antigua and Barbuda	CZ	Czechia(EP)	IR	Iran(Islamic Republic of)			SE	Sweden(EP)
AL	Albania(EP)	DE	Germany(EP)	IS	Iceland(EP)	ML	Mali(OA)[2]	SG	Singapore
AM	Armenia(EA)	DJ	Djibouti	IT	Italy(EP)[2]	MN	Mongolia	SI	Slovenia(EP)[2]
AO	Angola	DK	Denmark(EP)	JP	Japan	MR	Mauritania(OA)[2]	SK	Slovakia(EP)
AT	Austria(EP)	DM	Dominica	KE	Kenya(AP)	MT	Malta(EP)[2]	SL	Sierra Leone(AP)
AU	Australia	DO	Dominican Republic	KG	Kyrgyzstan(EA)	MW	Malawi(AP)	SM	San Marino(EP)
AZ	Azerbaijan(EA)	DZ	Algeria	KH	Cambodia	MX	Mexico	SN	Senegal(OA)[2]
BA	Bosnia and Herzegovina[1]	EC	Ecuador	KM	Comoros(OA)[2]	MY	Malaysia	ST	Sao Tome and Principe(AP[5])
BB	Barbados	EE	Estonia(EP)	KN	Saint Kitts and Nevis	MZ	Mozambique(AP)	SV	El Salvador
BE	Belgium(EP)[2]	EG	Egypt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A	Namibia(AP)	SY	Syrian Arab Republic
BF	Burkina Faso(OA)[2]	ES	Spain(EP)			NE	Niger(OA)[2]	SZ	Swaziland(AP)[2]
BG	Bulgaria(EP)	FI	Finland(EP)	KR	Republic of Korea	NG	Nigeria	TD	Chad(OA)[2]
BH	Bahrain	FR	France(EP)[2]	KW	Kuwait	NI	Nicaragua	TG	Togo(OA)[2]
BJ	Benin(OA)[2]	GA	Gabon(OA)[2]	KZ	Kazakhstan(EA)	NL	Netherlands(EP)[2]	TH	Thailand
BN	Brunei Darussalam	GB	United Kingdom(EP)	L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NO	Norway(EP)	TJ	Tajikistan(EA)
BR	Brazil	GD	Grenada			NZ	New Zealand	TM	Turkmenistan(EA)
BW	Botswana(AP)	GE	Georgia	LC	Saint Lucia	OM	Oman	TN	Tunisia
BY	Belarus(EA)	GH	Ghana(AP)	LI	Liechtenstein(EP)	PA	Panama	TR	Turkey(EP)
BZ	Belize	GM	Gambia(AP)	LK	Sri Lanka	PE	Peru	TT	Trinidad and Tobago
CA	Canada	GN	Guinea(OA)[2]	LR	Liberia(AP)	PG	Papua New Guinea	TZ	United Republic of Tanzania(AP)
CF	Central African Republic(OA)[2]	GQ	Equatorial Guinea(OA)[2]	LS	Lesotho(AP)	PH	Philippines	UA	Ukraine
CG	Congo(OA)[2]	GR	Greece(EP)[2]	LT	Lithuania(EP)[2]	PL	Poland(EP)	UG	Uganda(AP)
CH	Switzerland(EP)	GT	Guatemala	LU	Luxembourg(EP)	PT	Portugal(EP)	US	United States of America
CI	Cote d'Ivoire(OA)[2]	GW	Guinea-Bissau(OA)[2]	LV	Latvia(EP)[2]	QA	Qatar	UZ	Uzbekistan
CL	Chile	HN	Honduras	LY	Libya	RO	Romania(EP)	VC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CM	Cameroon(OA)[2]	HR	Croatia(EP)	MA	Morocco[3]	RS	Serbia(EP)	VN	Viet Nam
CN	China	HU	Hungary(EP)	MC	Monaco(EP)[2]	RU	Russian Federation(EA)	ZA	South Africa
CO	Colombia	ID	Indonesia	MD	Republic of Moldova[4]	RW	Rwanda(AP)	ZM	Zambia(AP)
CR	Costa Rica	IE	Ireland(EP)[2]	ME	Montenegro[1]	SA	Saudi Arabia	ZW	Zimbabwe(AP)
CU	Cuba	IL	Israel	MG	Madagascar	SC	Seychelles		

공개된 PCT 국제출원의 검색 및 확인 방법

2006. 4. 1. 이후 모든 PCT 국제출원은 전자적으로 공개되며, 특정 국제출원이 공개된 경우 국제사무국에서는 출원인에게 공개사실, 공개일자, 검색사이트 등 관련정보를 통지합니다.
공개된 국제출원은 WIPO 홈페이지의 'PATENTSCOPE' 사이트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1. PATENTSCOPE 주소: http://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2. 국제출원번호 등 검색어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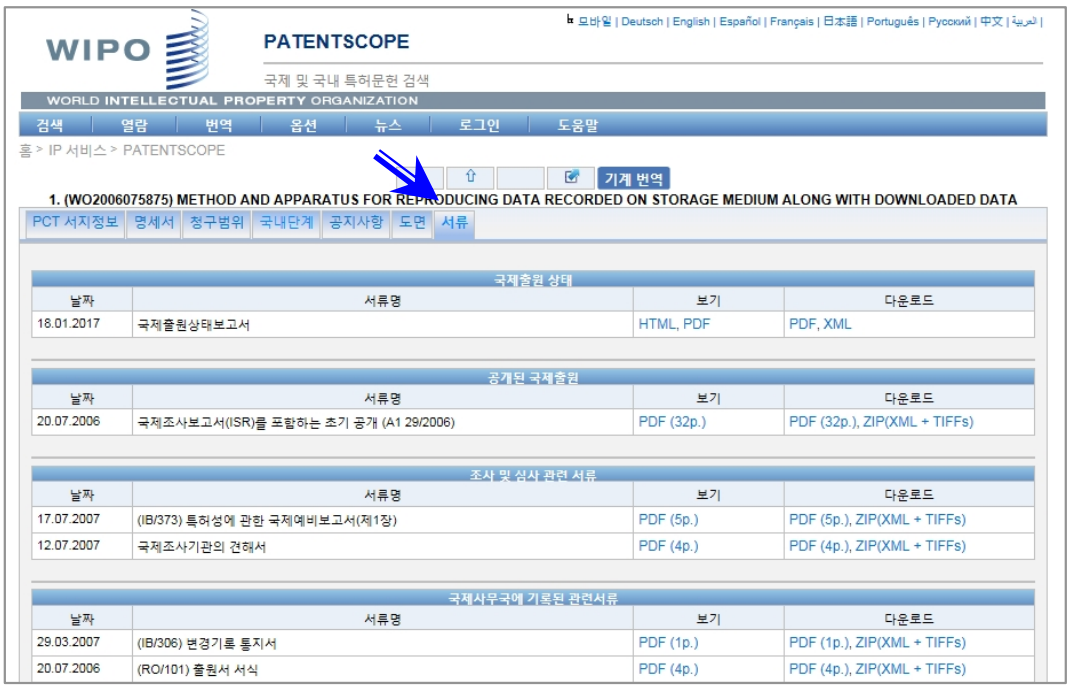


* 검색은 '단순검색', '고급검색', '필드조합검색', '교차언어검색' 기능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검색결과 확인



4. 상단의 메뉴 탭을 눌러 원하는 상세 정보 확인



편 집 위 원

국 제 출 원 과 장	송 병 주
국제출원과 사무관	지 상 훈
국제출원과 주무관	나 양 희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가이드

발행일 _ 2016년 12월
발행처 _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국제출원과
문의처 _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국제출원과
전　화 _ 042, 481, 5194
팩　스 _ 042, 472, 3473